

의정활동보고서

제232회 임시회(2009. 3. 24 ~ 4. 7)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새봄과 함께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현안사업과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도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지역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을 주는 풍요로운 경상북도 건설과, 올바른 인성 및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18대 국회 개원으로 우리 모두의 기대가 컸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지구촌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국내경제 역시 사상초유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각종 경기지표가 앞길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하락과 고용률 둔화가 민간소비 급락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생산과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경제의 위기 여파는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들은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연초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매

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는 재난과 위기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가뭄과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잦은 기상이변과 함께 한반도는 서서히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구 온난화가 우리 농업과 임업,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황사는 단순한 모래 바람이 아니라, 중국 공장지대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오염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눈과 호흡기, 피부건강 등이 크게 우려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도민의 보건위생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등으로 인하여 소중한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화재예방 시스템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마다 봄철 해빙기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해 첫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준비가 남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보며 세심하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사안들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출범 4년차를 맞는 제8대 경상북도 의정이 더욱 활기차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사상 유례 없이 3월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최우선 생각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300만 도민에게 비전을 주고, 밝고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고난을 이겨냈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역동적이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I. 개 황	5
II. 의사일정	7
1. 소 집	7
2. 회 기	7
3. 활 동	8
III. 의안처리	14
IV. 민원처리	15
1. 청 원	15
2. 진 정	15
V. 본회의 보고사항	17
1. 의안 접수사항	17
2. 조례 공포사항	18
3. 위원회 활동사항	19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19
VI. 5분 자유발언	23
VII. 도정질문	36

부 록

☐ 조례안	78
☐ 승인·동의안	117
☐ 결의안	139
☐ 기 타	144
☐ 종합심사보고서	148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32회 임시회는 2009년 3월 24일 11:00 개최하여 4월 7일 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24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3월 24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정경구 의원, 김종천 의원)을 청취한 후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휴회기간인 3월 25일부터 3월 30일,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전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건 20억원(토양훈증제지원사업), 세출예산 3건 54억 500만원(행복재단설립 25억원, 중앙부처전입공무원숙소구입 4억 5백만원, 토양훈증제지원사업 25억원)을 삭감하고, 차액 34억 5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화)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경상

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권한대행,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이재철 의원, 손진영 의원, 박진현 의원)을 하였다.

한편,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경상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분리지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의약품단지와 의료기기단지를 분리 지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당초 계획대로 조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권한대행,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권영만 의원, 김지수 의원, 김영만 의원)을 하였으며,

제4차 본회의는 4월 7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조동만 의원, 최윤희 의원, 박순열 의원, 전찬걸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잡종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32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한편, 이날 구성된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필각 의원, 부위원장에는 장두욱 의원이,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현준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경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9-6호(2009년 3월 16일)

라. 집회일시 : 2009년 3월 24일(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9년 3월 24일 ~ 4월 7일(15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4회(누계 73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특 위	
									예결	기타
231회 까지	603	33	94	87	90	80	79	89	38	13
232회	24	2	4	2	2	4	2	3	3	2
누 계	627	35	98	89	92	84	81	92	41	15

※ 제8대 의회 누계임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4(화) 11:00 (제1차)	※ 개회식 1.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6. 휴회의 건	
3. 31(화) 11:00 (제2차)	1.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도정에 관한 질문 ○ 통상문화위원회 이재철 의원(상주시) ○ 건설소방위원회 손진영 의원(영주시) ○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의원(영덕군)	수정가결 원안가결
4. 1(수) 11:00 (제3차)	1. 도정에 관한 질문 ○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권영만 의원(봉화군) ○ 교육환경위원회 김지수 의원(성주군) ○ 농수산위원회 김영만 의원(군위군)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7(화) 11:00 (제4차)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경북 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 보
	4.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009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7.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8.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잡종재산 무상 대부 동의안	원안가결
	9.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10. 경상북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
	11.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1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가결
	17.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가결
	18.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19.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20.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1.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25(수) 10:00 (제1차)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건 ☐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건 ☐ 제2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7(화) 10:30 (제2차)	☐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24(화) 14:00 (제1차)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공보관실, 새 경북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 공무원 교육원	
3. 25(수) 11:00 (제2차)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경제과학진흥국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 4. 3 (2일)	☐ 현지확인 ○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시설 - 영양 풍력발전공사, 영덕 태양광발전소 - 포항 소천문화관 지열·태양열 시설, 지능로봇 연구소, 가속기 연구소, 나노기술집적센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24(화) 14:00 (제1차)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복지여성국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5(수) 11:00 (제2차)	☐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 경북도립대학 ☐ 2009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 행정지원국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9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 경북행복재단 설립및운영조례안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24(화) 14:00 (제1차)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 보건환경연구원 ☐ 조례안 심사 ○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잡종재산 무상 대부 동의안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25(수) 14:00 (제2차)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청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24(화) 14:00 (제1차)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지원 조례안	
4. 2 ~ 4. 3 (2일)	☐ 현지확인 ○ 부추단지 방문(영덕군) ○ 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 현장 준비 점검 ○ 복숭아밭 한해 다발지구(영천시)	
4. 7(화) 12:30	☐ 간담회 ○ 경상북도농민사관학교 운영 활성화 관련 - 농수산위원 및 지역농과계 대학	

〈통상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24(화) 14:00 (제1차)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관광산업국	
3. 25(수) 11:00 (제2차)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체육국, 투자통상국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24(화) 14:00 (제1차)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4. 2 ~ 4. 3 (2일)	☐ 현지확인 ○ 김천 혁신도시(드림밸리)건설 현장 ○ 성주 용암~선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26(목) 10:30 (제1차)	☐ 2009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7(금) 10:30 (제2차)	☐ 2009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30(월) 10:30 (제3차)	☐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009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토론 및 의결 ☐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토론 및 의결	

〈경제살리기지원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4. 7(화) 13:4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4. 7(화) 13:0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Ⅲ. 의안처리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38 (306)	36 (300)	28 (243)	8 (52)	0 (4)	0 (1)	0 (1)	2 (5)	
조 례 안	소 계	28 (184)	26 (179)	19 (140)	7 (35)	0 (3)	0 (1)	0 (1)	2 (4)	
	의 제 회 안	5 (46)	4 (43)	4 (36)	0 (7)				1 (3)	
	도 지 사 출 제	14 (100)	14 (99)	8 (75)	6 (21)	0 (2)	0 (1)	0 (1)		
	교 육 감 출 제	9 (38)	8 (37)	7 (29)	1 (7)	0 (1)			1 (1)	
규 칙 안		0 (4)	0 (4)	0 (3)	0 (1)					
예산·결산		2 (26)	2 (26)	1 (11)	1 (15)					
동의·승인		3 (32)	3 (31)	3 (31)					0 (1)	
건의안		0 (4)	0 (4)	0 (4)						
결의안		2 (17)	2 (17)	2 (15)	0 (1)	0 (1)				
기 타 안		3 (39)	3 (39)	3 (39)						

◆ 상임위 유보중인 안건(5건)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07. 3.14상정유보)
- 경상북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 6.12심사유보)
- 경상북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 및 지원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11. 5상정유보)
- 경상북도난치병 학생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환경위원회-’09. 2.12심사유보)
-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09. 4. 7본회의 유보)

Ⅳ.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5 (74)	(4)	1 (8)	(5)	(32)	(3)	(2)	1 (5)	1 (5)	2 (10)
의 회 운 영	(3)	(1)								(2)
기 획 경 제	1 (12)			(4)	(3)		(1)			1 (4)
행 정 보 건 복 지	2 (9)	(3)	1 (5)							1 (1)
교 육 환 경	(6)					(3)		(3)		
농수산	2 (7)							1 (1)	1 (5)	(1)
통 상 문 화	(6)		(3)	(1)			(1)	(1)		
건 설 소 방	(28)				(27)					(1)
특 별 위 원 회	(3)				(2)					(1)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5 (74)	5 (74)				
의회운영	(3)	(3)				
기획경제	1 (12)	1 (12)				
행 정 보건복지	2 (9)	2 (9)				
교육환경	(6)	(6)				
농 수 산	2 (7)	2 (7)				
통상문화	(6)	(6)				
건설소방	(28)	(28)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조례안 9, 동의안 2, 예산안 2)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9. 3. 1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경제 (2009. 3. 16)
경상북도지사 (2009. 3. 1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경제 (2009. 3. 16)
경상북도지사 (2009. 3. 13)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09. 3. 16)
김종천의원외 23 (2009. 3. 2)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09. 3. 16)
경상북도지사 (2009. 3. 20)	2009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행정보건복지 (2009. 3. 20)
경상북도지사 (2009. 3. 13)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교육환경 (2009. 3. 16)
경상북도지사 (2009. 3. 13)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잡종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교육환경 (2009. 3. 16)
경상북도지사 (2009. 3. 13)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	교육환경 (2009. 3. 16)
경상북도교육감 (2009. 3. 13)	경상북도공업고등학교 부설직원교육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환경 (2009. 3. 16)
경상북도교육감 (2009. 3. 13)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9. 3. 16)
경상북도교육감 (2009. 3. 1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9. 3. 16)
경상북도교육감 (2009. 3. 13)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환경 (2009. 3. 16)
경상북도지사 (2009. 3. 13)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2009. 3. 16)

2. 조례 공포사항(14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9. 2. 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3. 9 (제3077호)
2009. 2. 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09. 3. 9 (제3078호)
2009. 2. 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안용복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09. 3. 9 (제3079호)
2009. 2. 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2009. 3. 9 (제3081호)
2009. 2. 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009. 3. 9 (제3080호)
2009. 2. 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9. 3. 9 (제3083호)
2009. 2. 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 조례	2009. 3. 9 (제3082호)
2009. 2. 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2009. 3. 9 (제3085호)
2009. 2. 2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2009. 3. 9 (제3084호)
2009. 2. 20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3.12 (제3087호)
2009. 2. 20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9. 3.12 (제3088호)
2009. 2. 20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3.12 (제3089호)
2009. 2. 20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3.12 (제3090호)
2009. 2. 20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3.12 (제3091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의회운영 위 원 회	2009. 3.18 ~ 3.19	부산광역시 경남도의회	• 타 시·도의회 운영상황 비교 견학 - 의회 운영 및 특수시책 - 본회의장 등 의회 내 제반시설 여건 비교 견학 등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 2009년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 제42차 정기총회
 - 일 시 : 2009. 2. 24(화), 11:00
 - 장 소 : 의성 농업경영인회관
 - 참 석 : 김응규 부의장
- 경상북도 통합방위 지방회의
 - 일 시 : 2009. 2. 24(화), 14:30
 - 장 소 : 경주 문화엑스포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생활개선회 회장단 이·취임식
 - 일 시 : 2009. 2. 26(목), 11:00
 - 장 소 : 농업인회관 강당
 - 참 석 : 김영만 농수산위원장
- 제4차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9. 2. 26(목), 14:00
 - 장 소 : 대구 한국패션센터
 - 참 석 : 방유봉 의회운영위원장

○ 생존애국지사 위문

- 일 시 : 2009. 2. 27(금), 11:00
- 장 소 : 포항, 경주 등 도내일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제90주년 3. 1절 기념식

- 일 시 : 2009. 3. 1(수), 10:00
- 장 소 : 영덕군 영해면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2009년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 일 시 : 2009. 3. 3(화), 14:00
- 장 소 : 의성 문화회관
- 참 석 : 김응규 부의장

○ 2009년 경상북도 재향군인회 제50차 정기총회

- 일 시 : 2009. 3. 4(수), 14:00
- 장 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

- 일 시 : 2009. 3. 5(목),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 개강식

- 일 시 : 2009. 3. 5(목), 14:00
- 장 소 : 군위 교육문화체육회관
- 참 석 : 김영만 농수산위원장

○ 경북도청노동조합 창립1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2009. 3. 5(목), 16: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업무 협의
 - 일 시 : 2009. 3. 10(금), 11:00
 - 장 소 : 국회의사당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 제17·18대 회장단 이·취임식
 - 일 시 : 2009. 3. 10(화), 11:00
 - 장 소 : 칠곡 농어민회관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김영만 농수산위원장
-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 일 시 : 2009. 3. 11(토), 11:00
 - 장 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5차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9. 3. 11(수), 15:00
 - 장 소 : 전남 여수시
 - 참 석 : 방유봉 의회운영위원장
- 노·사·민·정 산업평화선언
 - 일 시 : 2009. 3. 12(목), 10:00
 - 장 소 : 대구 제이스호텔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도의원
- 포항·구미 5국가산업단지 추진상황 보고회
 - 일 시 : 2009. 3. 12(목), 14:00
 - 장 소 : 경북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백천봉 교육환경위원장, 도의원
- 2009 경북태권도 신인선수권대회
 - 일 시 : 2009. 3. 14(토), 11:00
 - 장 소 : 영천 실내체육관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 2009 봄철 나무심기 행사
 - 일 시 : 2009. 3. 17(화), 10:30
 - 장 소 : 영천시 고경면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코오롱 구미공장 증설투자 MOU체결식
 - 일 시 : 2009. 3. 17(화), 15:00
 - 장 소 : 경북도청
 - 참 석 : 백천봉 교육환경위원장
- 2010상주대학생승마대회 성공개최 세미나
 - 일 시 : 2009. 3. 19(목), 13:00
 - 장 소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 참 석 : 이재철 통상문화부위원장
- 사이버농협 독도 발기인 대회
 - 일 시 : 2009. 3. 20(금), 11:00
 - 장 소 : 농협중앙회 본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세계 물의 날』 기념식
 - 일 시 : 2009. 3. 20(금), 11:00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김응규 부의장
- 시장·도지사, 시·도의회의장, 국무위원 합동 워크숍
 - 일 시 : 2009. 3. 21(토), 10:30
 - 장 소 : 중앙공무원교육
 - 참 석 : 이상천 의장

VI. 5분 자유발언

□ 2009년 3월 24일(화) 제23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정경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안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초 낙동강 다이옥산 오염사고 여파였는지 김범일 대구시장님께서서는 지난 2월 20일 대구시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대구시 상수원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겨 대구 매곡취수장까지 171km 구간을 상수도관으로 연결해서 하루 60만톤의 물을 공급 받는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안동과 예천, 상주, 구미 등 낙동강 상류유역권 자치단체와 논의는 물론, 낙동강 수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여 극심한 비난과 반대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와 학계에 따르면 갈수기인 요즘 안동댐의 1일 방류량은 하루 약 160만톤인데 대구시가 30%가 넘는 60만톤을 가져간다면 하천유지수 부족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유지수가 부족할 경우 식수를 포함한 각종 용수원을 낙동강 물에 의존하는 1,000여만 명의 전체 지역 주민들이 겪을 위기와 혼란을 고려하지 않고 대구시가 자신들의 상수도 개선만을 위해 극히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동댐이 대구시 상수원 취수원이 될 경우 댐 일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미 담수 30여 년간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묶여 온갖 규제를 받았던 안동과 봉화 일부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규제를 받게 되어 더욱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자 최근 대구시에서는 앞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이 대구시 상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개인적 덕담 수준의 견해나 당정협의를 사형임을 들어 상수원을 다시 김천과 구미 일대 낙동강

이나 건설계획중인 영주 송리원댐으로 옮기는 방안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정부 관계부처나 경상북도와 긴밀한 업무연계도, 대책논의도 하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계획만 남발하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의 이런 갈팡질팡하는 행보는 최근 들어 물 전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원활한 용수확보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 자치단체간에 골 깊은 반목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난맥상도 문제이지만 경상북도 또한 무대책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의 거둬들인 상수원 이전변경계획이 도내 낙동강 수계 자치단체 주민들과 그리고 환경단체를 발각 뒤집어 놓았지만 정작 경상북도는 여태까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태도는 댐 주변지역 추가규제와 낙동강 물 확보문제로 애태우는 안동, 예천, 김천, 상주, 구미 등지의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에 목말라 하는 대구시민들에게도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94년 폐놀사태 이후 근래의 퍼클로레이트 오염사고, 다이옥산 오염사고, 고령 골재채취장 기름유출사고 등 대구시 상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켜 대구시민들에게 극도의 수돗물 불신을 초래한 책임에서 경상북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주요 환경사고는 대부분 경상북도내 낙동강 중·상류지역 자치단체의 공단 등에서 원인제공을 한 것이고 1차적 관리책임이 있는 경상북도는 사고당시만 요란법석 했을 뿐이지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너무 소홀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안동댐 상류, 봉화 석포지역 아연제련소 중금속 폐수문제와 임하댐 상류, 영양, 청송지역 하수처리장 건설문제도 지지부진 세월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대구시 상수원의 수질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정부와 경상북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저 자연친화 또는 환경으로 포장된 토목사업 계획만 준비하게 나열될 뿐 대단위 수질개선 사업은 거론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수질문제와 대구시 상수원 오염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엇박자를 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항상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구·경북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주체가 되고 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 환경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물문제로 빚어진 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하고 풍부하고도 질 좋은 낙동강 수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처럼 부산시 상수원 남강댐 취수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부산과 경남이 발 빠르게 정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남강댐 물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낙동강은 죽은 강입니다. 또 그 때문에 상수원을 수백리 떨어진 상류 지역 댐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댐과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낙동강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좋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면 그런 수원을 공급하는 강을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영구히 푸르고 유장(悠長)히 흐르는 낙동강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년 3월 24일(화) 제23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종천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영주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3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11월 25일 제23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사님께 열악한 북부지역의 응급의료지원체계 부족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영주와 봉화지역의 경우는 의료서비스 체계의 부족으로 환자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 있는 독립안동의료원의 경우 이용환자의 80% 이상이 안동시민으로서 이미 독립의료원의 기능을 상실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공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독립의료원은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80% 이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 상기해야 될 것은 1999년에 개원한 안동도립노인병원이 320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동도립의료원 내에 노인전문병동을 160병상으로 건립해서 금년 4월 초에 운영예정에 있습니다. 한 지역에 독립노인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의료원 안에다가 노인병동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병원 두 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의 과잉 또는 중복되는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인근 지역은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서 1년에 십수명씩 생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번 본 의원이 도정질문 이후 우리 지역 손진영 동료의원과 함께 영주도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서명운동 과정에서 영주와 봉화의 많은 도민들이 의료시설의 부족에 대한 민원과 함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체계가 영주지역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염원과 영주도립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영주와 봉화지역 도민들의 절실한 염원과 요구가 담긴 2만 1,000여 명의 서명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직접 전달하려고 합니다.

도지사님께서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안동도립의료원은 신도청이전지로 3만평 규모로 자체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이전을 할 바에는 신도청지역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정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료원을 저희 지역에 꼭 설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만 1,000여 명의 영주시민들의 여망이 담긴 이 서명서를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전달을 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9년 4월 7일(화) 제23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조동만 의원(농수산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영양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조동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종 분야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10여일 전 동해안 대게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에 모임이 있어서 간적이 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대게를 사려고 업소의 수족관을 보던 중 수족관과 그 주위에 연중 잡아서 안 될 많은 대게 암컷 즉, 방게와 체장미달인 9cm미만의 대게를 불법 포획하여 보관 판매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방치하면 대게자원이 고갈 될 것이라 판단되어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예산 23억 5,000만원 중 치어, 치게 생산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8억 5,000만원이며 순수한 치게에 소요되는 예산이 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북도에서는 수산발전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데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은 암게인 방게와 체장미달인 대게를 마구잡이하여 방게는 마리당 800원, 그리고 체장미달인 대게는 1,500원에서 5,000원으로 밀거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업인들이 대게를 마구 잡아 판매를 한다면 대게는 고갈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바로 어업인들이 자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북도의 대게 생산량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생산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생산량의 85%로서 2007년도에 4,129톤, 2008년도에는 2,554톤을 생산한 것으로 1년 사이에 무려 1,575톤 즉, 1/3정도 급감하였으며, 올해 대게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요 원인은 체장미달인 대게와 방게를 마구 잡아 밀거래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008년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치게 사육에 성공하여 앞으로 어업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업무보고를 듣고 참석한 농수산위원들은 크게 기뻐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박수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치게의 생산량은 작년에 600마리 생산하였고, 올해에는 5,000마리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을 예산으로 환산하면 치게 마리당 3,500원이 소요됩니다. 방계한 마리가 산란하는 숫자는 무려 8만에서 10만 마리라고 합니다. 방계한 마리가 보호되면 수산자원개발연구소 1년간 치게사업 보다 약 20배에 해당되는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몰지각한 어업인들이 연중 잡아서 안 될 방계를 불법 포획하여 판매한다면 경북대게의 명성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대게축제도 중요합니다. 축제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축제시기가 지나 5월이 되면 산란기에 접어들습니다. 방계는 대게가 없으면 다른 어종들에 의하여 대게 아닌 다른 어류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계가 없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와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업인들이 길러서 제 시기에 잡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년 4월 7일(화) 제23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최윤희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한나라당 비례대표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최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근대화 60년은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성장의 표본입니다. 과거 60년대 국민소득 79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2위에 육박하는 경제대국을 이뤄낸 저력의 중심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리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근대화와 경제성장은 우리 경상북도에 수많은 역사적 현장을 남겼습니다. 특히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며,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구미산업단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또한 1970년대를 관통했던 새로운 차원의 한국사회 정신운동인 새마을 운동의 성지들도 우리 경상북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대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고 기념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민의 노력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서울 상암동에 국비 200억원을 들여 시작하였다가 2005년 국비 이외에 500억원을 목표로 한 성금 모금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국비지원이 중단되면서 현재 정부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는 등 지지부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논의만 분분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은 2009년 현재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도고별장을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몇 년 전에는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을 시도하는 등 상당히 의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구미시는 자체적으로 1990년대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관리에 나섰으며, 박정희 체육관 명칭변경과 ‘박정희로’의 도로명 변경과 2010년까지 사

업비 216억원을 들여 생가주변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 확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는 9월 구미에서 5일간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박람회추진위 측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30만명 이상 구미와 경상북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구미와 경상북도를 방문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구미에 박대통령 생가가 있고, 박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창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에게 지금의 구미 생가를 보여 주는 것은 구미시민이나 도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미시는 현재 방문객을 위해 임시 주차장 설립을 고려하고 있고, 박대통령 유물 5,600여 점은 전시할 공간이 없어 산출장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본 의원은 우리 경북도에서 박정희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부 파행적인 관행을 바로 잡는 상징적인 출발이 되며, 기념사업의 정당성도 한결 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박대통령 기념관은 여러 시·도로 분산할 것이 아니라 고향 구미에 건립하여 기념사업의 근본취지를 더 높이고, 따라서 경상북도가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박대통령 기념관이 처음 거론 되었을 당시 구미시민들로 구성된 박대통령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도단위로 확대 개편한다면 성금 모금 등을 통한 부족예산 충당은 물론,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북지역의 정체성과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지켜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박대통령의 혜안과 기백을 대국적으로 기리는 국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우리 경상북도가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더욱 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요즘 지역이 정체성을 올곧게 세우고 지켜나가는 길잡이로서 하루속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검토와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4월 7일(화) 제23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박순열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청도 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박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청도는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요, 삼국시대 화랑정신의 발상지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의의가 매우 높고 중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역사를 간직한 청도군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오랜 전통인 소싸움을 특화하였고, 그로인해 청도 소싸움축제는 개최 때마다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성공한 지역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도 소싸움축제는 2009년 대한민국 대표 축제 전통문화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청도 소싸움축제가 처음으로 상설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으며, 경상북도와 동료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이처럼 청도 소싸움축제는 지역관광의 메카로 우리 청도군과 경북도의 이미지와 브랜드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청도군은 독자적으로 수백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지난 수년간 경기장 건설사업비 투자 및 관련 법률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청도군민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도공영사업공사’에 조건부 청산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의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나 이로 인하여 청도군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상설 소싸움경기장’ 건립은 국비 48억원, 도비 11억원, 군비 28억원, 민간자본 554억원 등 641억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상설 소싸움경기장 개장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약 90억원의 개장준비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의 열악한 청도군 재정상황과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재정상태를 감안컨대 재정확보가 너무나 불투명하여 개장을 목전에 두고 좌초될까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떠나 엄청난 공공예산과 민간자금이 투입되고도 이렇게 오래 표류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엄청난 손실이며, 더 나아가 경상북도 관광산업의 시너지효과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때에 오히려 도차원에서 성공적인 개장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자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청도군의 부흥에 대한 탄탄한 불씨가 되고 그 부흥이 경상북도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확신합니다.

물론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각고의 자구노력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각고의 노력과 함께 경상북도의 초기 개장 비용의 전폭적 지원과 적극적인 조세제도의 개선이 병행된다면 경영정상화는 멀지 않은 미래에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설 소싸움장이 개장되면 도차원에서 레저세 감면조치도 적극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사업의 초기에 일정한 레저세를 감면하여 지역의 레저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이러한 레저세 감면을 통하여 소싸움경기장이 정상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청도군의 재정자립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도 신규 세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Win-Win의 결과를 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힘차게 매진하는 청도 소싸움에서 가뜩이나 어렵고 힘겨운 경제난국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인내와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청도군민과 더 나아가 경상북도민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9년 4월 7일(화) 제23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전찬걸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울진 출신 전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4월 29일은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거하는 날이기에 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간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다른 직종과 달리 사람을 가르치고 기르는 일만은 외부의 영향이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보궐선거를 이미 치렀던 타 지역의 경우 선거가 끝난 뒤에도 많은 후유증이 남아 당선자가 소신 있게 교육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 우리 상임위에서도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공직자선거중립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었고 도교육청에서도 행정지도와 학교장, 지역 교육장 회의시 여러 번 강조하여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예비후보자들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4일부터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각 후보자 진영의 판세에 신경을 쓰고 줄을 대어 가장 때 묻지 않고 순수해야 할 교육까지 출세와 편 가르기의 장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1년 2개월간의 짧은 재임기간을 위해 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보존비용 186억원과 후보1인당 제한비용 14억원 등 총 200여억 원의 법적선거비용은 어

려운 경제현실에 비춰볼 때 너무나 많은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투표율을 보면 2007년 2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5.3%, 2008년 6월 충청남도교육감 17.2%, 같은 해 7월 전라북도교육감 21%, 서울시교육감 15.5%, 12월 대전시교육감 15.3%로 평균 약 17%의 투표율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많은 관심 속에 선출된 교육감은 임기 중 추진하는 정책이나 행정의 힘을 얻어 결집 속에 교육행정을 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주민의 무관심으로 정책입안자 편의주의로 교육행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과 떨어져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3백만 도민이 겪어야 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낸 200여억 원의 비싼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우리 경상북도 교육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선택하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마자도 교육의 미래보다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이기주의적,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도민의 이름으로 지탄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근절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간곡한 호소가 부디 관철되어 우리 경북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보궐선거가 타 지역 어느 곳보다도 투표율이 높고 또한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공정선거를 위하여 보다 더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공정선거의 실천자가 되도록 합시다.

일선학교의 공직자는 오로지 학교와 학생들의 지도에만 전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II. 도정질문

□ 2009년 3월 31일(화) 제23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이재철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주 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이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당면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 극복과 중앙예산 확보 등 경북의 성장·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백년대계의 인재양성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벌 시대에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산물의 풍요 속에 가격폭락과 쌀직불금 파동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당면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물론 공직자들의 혁신적인 사고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도내 농민들은 농자재 값 폭등 및 농업비용 상승과 가뭄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지역의 농가소득 현황을 보면 2005년도 2,782만원, 2006년도 2,940만원, 2007년도에는 2,727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이전소득도 역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농가부채는 2005년도 2,100만원, 2006년도 2,110만원, 2007년도에는 2,352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와중에도 비료와 사료 등 주요 농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 가격 변동상황을 보면 2008년도의 경우는 2007년도 대비 13%이상 상승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2008년도 대비 23%나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농약 및 비료 농자재의 평균 상승률이며 실제 비료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6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상승으로 농민들의 체감 고통은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자재 사용비용은 농업경영비에서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자재 가격은 농산물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농업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농민들의 고통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전에는 농민에게 비료값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보증제도마저 중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농자재 가격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지원사업 및 농가지원사업을 보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원규모와 비율이 농자재 가격상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가 지난 '93년 전국에서 최초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지역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의 대출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542건에 150억원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360건에 136억원에 그쳐 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별로 살펴보면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41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5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운영자금의 경우는 2007년도 109억원에서 2008년도 8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규모가 2008년 12월 기준 1,166억원으로 경기도의 1,300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 차원에서 지역의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은 기금조성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기금의 지원율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특히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자율을 현행 1.5~2%에서 연리 1%대 이하로 인하하여 실의에 빠진 농어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도는 이러한 이자율 인하조치나 상환기간의 연장과 같은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주요 농자재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등 외부요인에 의한 농업 경영비의 급작스런 변화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농가피해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돕기 위한 대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자재가격 변화에 대한 농가 및 관련 업계의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자재가격 연동 보조금제의 도입과 같은 대안 외에도 도 차원에서의 농자재 값 안정화와 같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할인매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서민들의 생계가 걸린 전통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더욱 도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은 포항시 등 10개 시군에, 총 발행액은 302억원이고 총 판매액은 248억원으로 상품권 사용실적이 8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군의 경우 총 발행액 31억 2,900만원에 100%의 상품권 사용실적이 달한 반면, 상주시의 경우는 총 7억원 발행에 4억 6,000만원을 판매한 상품권 사용실적이 66%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주시의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은

2006년도 5억 4,00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1억 6,000만원으로 급격하게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도에 상주지역에 2개소의 대형마트가 입점하여 지역 전통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의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실적 부진과 지역간 편차가 심한 것은 지역마다 들어서고 있는 대형유통점, 그리고 슈퍼 슈퍼마켓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즉 대형 유통기업의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독점해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신설된 대형마트 및 슈퍼 슈퍼마켓의 현황을 보면, 대형마트의 경우 포항시 4개소, 상주시 2개소, 영주시 2개소, 경산시 2개소이며, 슈퍼 슈퍼마켓은 포항시 1개소, 경주시 3개소, 안동 1개소, 구미 4개소, 영주, 영천, 성주군이 각각 1개소씩 신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의 잇따른 슈퍼 슈퍼마켓 신규진출 및 매출점 확대가 잇따르면서 동네 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와 자금의 역외유출 등을 막기 위한 최저기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일부 시군에서는 현재 영업 중인 대형 유통업체 10개소 중 9개소가 외지업체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하고 영세상인들의 영업손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대형유통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상향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 2종 주거지역에 판매시설면적을 종전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간접적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형마트 지역기여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내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고,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상품을 일정비율 이상 매입토록 하는 한편, 현금매출액을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 등의 내용을 권장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아울러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8년 11월에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전국 전통시장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시장특성별 활성화 평가에서 경북의 전체시장 178개 시장 중 A수준은 2개소, B수준은 9개소, C수준은 44개소, D수준은 68개소, E수준은 55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종합평가점수는 40.9점으로 전국에서 광주, 전남, 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 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지원에 2006년도에는 212억원, 2007년도 258억원, 2008년도에 7,280억원으로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대폭으로 증가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이는 민생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민심이 함께 유통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이러한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주대와 경북대 통합조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극심한 진통 끝에 통합했던 상주대와 경북대가 통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통합 당시 내세웠던 장밋빛 공약은 현재까지 단 한 가지도 이행되지 않고 유사중복학과 통폐합만이 진행되어 상주캠퍼스의 공동화를 재촉하고 나아가 상주의 활력을 빼앗아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경북대가 실시한 경북대 명문화를 위한 경영진단 발표내용에 의하면 상주캠퍼스는 에코바이오캠퍼스로 특성화하고 중복된 유사학과와 부충장실도 대구캠퍼스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북대가 이러한 경영진단을 받아들여 실행할 경우 상주캠퍼스에는 생태환경시스템학부와 생태자원응용학부 등 소위 BT관련 학과만 남게 되고 이공대와 보건복지학부 등은 대구캠퍼스에 흡수되며, 대학 내 행정조직도 1개 단과대 행정조직 정도가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통합 당시 상주캠퍼스의 학생수와 행정조직 유지가 경북대와 상주대 통합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현재 상주지역 주민들과 상주대 동창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주대와 경북대의 통합정신은 통합이 지역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주캠퍼스의 축소는 상주지역의 인구감소와 함께 상주시 경제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어서 도차원에서는 특별히 지원한 것도 없고 현재로서는 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위기의 시대에 지역대학의 통합으로 인해 상주지역민들에게 더욱 마음의 상처와 패배감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도 차원에서 뒷짐만 지고 지켜보는 일밖에 없다는 현실이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마을 박람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금년은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1960년대 국민소득 79달러의 최빈국에서 지금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게 된 원동력은 새마을 운동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가슴속에 최고의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한 가운데에 우리 경상북도가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경상북도는 2005년부터 새마을 운동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국가의 지역개발과 빈곤퇴치운동을 펼치고, 중국, 베트남, 에콰도르 등의 공무원과 지도자들이 새마을 운동의 정신과 기법을 전수받기 위해 우리 경북도를 방문하는 등 OECD 회원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상 유례 없는 세계 경제위기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

고, 이러한 세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의 기회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국민의식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새마을 운동을 작금의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이자 중흥지인 우리 경북도는 새마을 운동의 가치와 방향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전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더 나아가 21세기형 지역발전 모델과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금년 9월 중 새마을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28억원을 편성하였고,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듯 많은 예산을 들여 처음으로 준비하는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가 우리만의 행사, 새마을에 관여하는 몇몇 인사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고 우리 경북도가 가진 새마을 운동의 노하우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는 행사가 타 시·도와 시·군, 그리고 새마을 단체나 학회 등의 대대적인 참여가 없다면 단순한 지역박람회나 축제 정도로 전락하여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마을이라는 단일 주제로 어떤 형태의 전시관을 만들 계획이신지 또한 컨퍼런스나 체험행사, 상징물 등을 준비하고 있는지, 외국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은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시물이나 상징물들의 활용계획과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폐교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두 번씩이나 학교 폐교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학교 폐교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폐교는 단순한 폐시설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릴 적 추억이 깃들어 있는 마음의 고향이자 그 지역의 구심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82년부터

2009년 2월 현재까지 경북도내에서 폐교한 학교 수는 총 608개교에 이르며, 그 중 처리가 종결된 폐교는 약 57%인 344개소,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약 31%인 187개소이며, 이중 미활용 폐교 수는 77개소로 현재 약 12%의 미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미활용 폐교 수는 상주시 8개소, 포항 7개소, 예천 6개소, 경주 6개소, 영천 6개소의 순입니다. 여기서 2009년도에 폐지된 학교 수의 미활용을 제외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우리 경북도의 미활용 폐교 수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북도내 폐교별 세부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87개교가 폐교하였으며, 그중 처리 종결된 폐교 수는 18개소에 이르며, 임대 12개소, 자체활용 16개소에 이릅니다.

이중 임대와 자체활용의 용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주로 교육용시설에 29%로 주로 교육용이 가장 많은 활용 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18%, 사회복지시설 7%, 지역민 소득증대시설 7%, 문화시설 4% 순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체육시설로의 활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문화시설로의 활용도 매우 저조합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용과 사회복지시설로의 활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술촌처럼 문화공간으로 다듬어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휴양시설로 개조하는 방안 등을 통해 폐교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역의 폐교활용을 더욱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의 연장이나 재계약에 대한 안전성 담보와 폐교 활용, 운영, 시설비 지원 등과 같은 폐교 대부관련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폐교활용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각종 지역계획과의 연계, 폐교활용의 다양화, 특성화 및 복합화 추진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9년 3월 31일(화) 제23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손진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영주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손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여러분, 김응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300만 경북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임승빈 교육감권한대행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빈곤계층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사상 유례없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빈곤층 위기가정이 급증하고 있고 전국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급작스럽게 생계수단을 잃은 이들은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통해 6조 1,000억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08년말 현재 12만 4,425명으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대부분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0%까지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수급자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중에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도 자산소득 기준이 일부 초과되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류상 요건은 갖추지 못해도 직접 찾아가서 살펴보고 정부지원이 꼭 필요한지, 돕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돕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적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데 도의 전 직원을 각 시·군의 복지담당자와

공동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2008년의 경우 의료급여 1만 2,963명, 자활근로 1,200명,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5,200명, 장애아동수당 247명,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6,600명, 저소득 보건·보육료지원 1만 3,000명 등으로 총 약 3만 9,350명입니다.

이러한 현황은 차상위 계층이 기초수급자의 1.5배에서 2배로 추정된다고 볼 때 현재 3만 9,350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만 명은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상위 계층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제도를 2008년 4월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하였으며, 올 4월에는 18세미만 아동·청소년과 만성질환자에게도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우리 도의 만성질환자 6,134명, 그리고 18세 아동·청소년 6,829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정부예산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보았으나 이번 조치로 더욱 힘든 상황 하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는 이러한 실질적 보호관리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따라서 이러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전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 전달체계 누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노인일자리사업 및 독거노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 2008년말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40만 2,46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5.1%에 달합니다. 이는 이미 노령사회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

사한 바에 의하면 경북지역의 빈곤노인 비율은 39.9%로서 전남 42%, 경남 42%에 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극심한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경북 노인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인복지예산 비율은 충청남도가 7.1%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경북이 7%,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예산확보율이 높은데 반해 노인복지서비스는 다소 미흡하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최근 경북도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간 1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만 3,525억 원의 예산편성 및 1만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통정리 등 공익형, 문화재 해설 등 교육형, 노인 돌봄 등 복지형, 민간분야 일자리로 인력파견형, 소득창출형, 창업모델 등 1,900여 개입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은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이 요구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책은 급여수준도 20여만 원 밖에 안 되게 낮은데다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노인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유형 중 지속성이 떨어지는 공익형과 복지형, 교육형의 비중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파견형 및 시장형 비중은 10%에도 못 미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형은 지원이 끊기더라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대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수와 예산만 발표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 현실의 일자리가 될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노인복지예산 비중은 기타 어느 도보다도 많이 확보하였으나 노인복지 수준은 그 예산확보율을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일자리 창출 결과제시에 대한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경북의 독거노인 인구가 7만

8,665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20.1%에 달하고 제주, 전남, 경남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독거노인에 대한 수요 역시 우리 경북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현재 노인 인구수 대비 독거노인 비율이 시·군의 경우 울진군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에 영양군 28%, 고령군, 군위군 순으로 주로 군 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대비 비율에도 훨씬 높은 비율이며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대부분이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 있어 사회적 직·간접적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최근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이들 독거노인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도차원의 독거노인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대책은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개발 및 사회적 유대감 형성 캠페인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노인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노인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일할 수 있는데도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노인을 만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시혜적 복지예산에서 탈피하여 생산적 복지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인복지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높은 성장잠재력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고환율시대인 지금은 해외여행이 줄면서 국내여행으로 U턴하는 여행객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황이라고 해도 주말과 연휴, 관광지에서 숙박할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내국인 여행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도가 자칫 이러한 틈새와 기회를 고스란히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최근 철도공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541명의 여행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북방문객 숫자는 126명,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로는 강원도, 제주, 부산,

전남, 경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을 꼽은 응답자는 15.9%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향후 방문 의향 지역으로는 제주, 전남, 강원, 경남, 경북 순으로 나타나 우리 경북관광의 경쟁력 또한 전국의 중·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경북도 관광객 방문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의 경우 2006년 51만 명, 2007년 65만 명, 2008년 65만 6,000명으로 해마다 25.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0.6%의 미미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국인의 경우 2006년 6,186만 명, 2007년 7,870만 명, 2008년 8,551만 명으로 나타나 매년 27.2%와 8.7%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치는 2007년의 경우 '2007년 경북방문의 해'로 인하여 증가폭이 상승하였지만 그 이후 2008년에는 실제로 증가세가 너무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를 외국인 100만 명, 내국인 1억 명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의 근거는 무엇이며, 달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광통계와 목표치가 얼마만큼 정확성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실제 관광객 현황을 지역내 유료 관광지 입장객 수와 함께 무료 관광지 관광객 수를 합산하여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통계치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만 내실 있는 관광전략과 목표를 구축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 엔고 강세의 영향으로 부산과 서울의 일본 관광객 대상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 경북은 문화재 관광 중심으로 잠시 들러갈 뿐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1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총 23만 7,192명으로 같은 달 전체 입국자의 45%에 달하고, 그들 중 1월에 경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은 2만 명으로 작년 1월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돈 쓸 장소나 상품이 없어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방문에 비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관광개발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수익성입니다. 그런데도 경북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점이 인접 대구공항을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없고, 카지노 등 레저 및 오락공간도 부족하여 이들이 지역에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구시와 경북도가 전략적으로 관광지 개발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관광인프라를 함께 갖추지 못한다면 단지 우리 지역은 ‘관광 경유지’로 전략하게 되고,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들을 서울과 부산 지역의 거대 상권에 흡수시켜 주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이들이 거쳐가는 ‘실속 없는 관광 경유지’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고시키기 위한 관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관광지 개발과 함께 카지노 건설 등 레저 시설, 면세점, 상가 등 관광인프라를 적극 구축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도 관계법령 등을 개정해서라도 대구·경북 지역에 카지노와 면세점을 신규로 허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 광역 브랜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우 광역 브랜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우클러스터 사업으로 국·도비를 합하여 총 110억 원을 쏟아 부어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 광역 브랜드로 부르고 있는 “참품한우” 사육두수는 총 2만여 두이지만 실제 2008년도 “참품한우” 브랜드로 출하한 두수는 총 1,200여 두로 사육규모의 6%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소비자 시민의 모임으로부터 우수 브랜드로 인증 받은 영주한우의 경우는 총 7,000두 사육규모로서 이중 2008년도 영주한우 브랜드로 출하한 두수가 700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상감한우의 경우도 총 1만 6,000두 사육규모 중 2008년도 상주상감한우 브랜드로 출하한 두수가 500여 두로 파악되고 있어 경북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광역브랜드와 지역 개별 브랜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에서는 “참품한우”인 광역 브랜드에 집중적인 지원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과연 1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겨우 연간 1,200두만 출하한다는 것은 결국 나머지 농가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광역 브랜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참여 확대와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또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우 광역 브랜드 사업이 초기에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고 세계속의 명품한우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주는 예로부터 민족정신 교육의 산실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이었던 소수서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단종 복위운동 의거지로도 유명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우수한 문화자원인 부석사와 선비촌 등 유불문화의 본고장으로서 호국불교와 전통 선비정신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비의 숨결이 가득한 영주 지역에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이 자리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의 근본 취지와도 부합되며, 그 상징성도 배가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정통성과 더불어 미래지향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21세기형 교육의 중심지로서 영주는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반이 되는 선비문화수련원과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로서의 혁신 및 협력 전문교육기관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개념의 교육혁신 도시로서의 제도구축 및 인프라 면에서도 영주 지역의 입지가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무원교육원이 영주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과 농수산 관련은 해당 국장님들께서 안 계신 관계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년 3월 31일(화) 제23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진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김응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덕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진현 의원입니다.

주요경제지표들이 모두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개인에서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살길이 막막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현장에 달려 나가 발 벗고 나서서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어업 및 저인망 어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경상북도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 300만 마리의 종묘를 생산하여 방류하는 등 자원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업 현장에서는 수산물을 무주물로 인식하고 마구잡이식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어업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은 자원남획은 물론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등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25건, 2007년도에 34건, 2008년도에 34건 등에 지나지 않아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단속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공조조업,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등 도내 주요 불법어업 예방과 단속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와 아울러 본 의원은 동해구 기선저인망 어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인망 어업은 다른 근해어업과는 달리 저서어종 및 해저 가까이 오는 어종을 포획하기 때문에 포획 대상물이 매우 많습니다. 더군다나 자루형

그물 속에서 한 시간 이상 예인된 어획물은 양망시 대부분 죽은 상태에 있는 등 저인망 어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고 있지만 수산자원 고갈의 중요한 주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동해구 기선저인망 어업 허가건수가 강원도의 18건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24건에 이르고 있고, 어획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3,103톤의 어획량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008년도에는 4,580톤으로 2006년에 비하여 47.5%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2006년도의 1,160톤이던 것이 2008년도에는 1,140톤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도내 동해구 기선저인망의 어획량이 2006년 대비 2008년 현재 47.5% 증가한 수치는 도내의 해면 어업이 2006년의 11만 9,249톤 대비 2008년도에는 16만 8,229톤으로 41% 증가한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인망 어업 등 어획 강도가 높은 어종부터 감척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북 동해안은 '90년도 초까지 우리나라의 고질적 불법어업인 일명 고데구리로 불리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극성을 부렸으나 행정기관의 단속과 어업인의 의식변화 등으로 완전히 근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경남, 전북, 전남 등 서남해안에서 소형기선저인망으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이 3,000여 척에 달하여 정부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특별법을 제정하여 2006년까지 800여억 원의 사업비로 2,500여 척의 어선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서남해안에서는 극성을 부리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근절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 도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동해구 기선저인망 및 트롤어업 감척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구 기선저인망 및 트롤어업 등 어획강도가 높은 어업의 어선감척을 위해 국비사업에 수반되는 지방비 부담액 외에, 별도로 도비를 확보하여 감척할 계획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구 기선저인망 어업인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반 근해어선 감척 사업과 차별화된 조건으로 감척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 어업의 적극적인 감척을 위해 우리 도 차원에서 어업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북 북부의 도로 교통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국가 간선도로와 굵직굵직한 도로망 사업들이 결실을 보면서 경북 북부지역은 교통오지에서 이제 교통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권은 교통지도를 확 바꿀 수 있는 도로건설 및 확장공사가 2009년 올해부터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도로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면 수도권 등지의 관광객들이 경북을 찾는데 있어서 불편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산물을 비롯한 임산물 등의 원활한 수송도 가능해져 경북 북부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계획과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해와 영양, 봉화를 잇는 918번 지방도로는 경북 북부지역 민들의 중요한 도로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도로망에 비하여 그 중요성의 비중이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918번 지방도로는 봉화, 영양, 그리고 영해를 잇는 108.2km 왕복 2차로로 경북 북부내륙지역을 동해안 7번 국도와 연결되어 동서축의 34번 국도를 보조하는 매우 중요한 도로로 경북 북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도가 아닌 국가지원지방도로의 지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918번 도로는 사실상 죽음의 도로로 불리울 정도로 도로의 폭이 좁고 겨울에는 늘 빙판길이어서 처음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사고가 나기 십상인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에 경북 북부 도로망의 확충방안과 더불어 918번 지방도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종합연수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경북도청이전지가 1981년 대구시와 분리된 지 27년 만에 안동 풍천과 예천 호명 일원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추진단이 구성되고 관련예산이 배정되는 등 도청이전작업이 가속화 되고 있는 등 향후 2013년 12월까지 도청이전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 추진뿐만 아니라 도청이전과 관련한 SOC사업 추진,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추진 등 후속과제의 착실한 수행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다 도청이전 문제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유보되고 있는 경상북도종합연수원 설립을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종합연수원은 경북도 구성원들의 지식 재충전을 위한 학습의 장과 심신을 단련하고자 300명을 수용하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연면적 10,720㎡의 시설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종합연수원 부지매입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해 12월에는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3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27,281㎡의 부지가 매입되었으며, 2006년 6월에는 종합연수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이 시행되어 명백한 타당성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소요 운영비 문제와 사후관리 문제로 애로를 겪다가 2007년 도청이전 문제가 남아있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종합연수원 건립과 관련하여 이미 2005년에 4억 5,000만원, 2006년에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건립의 명백한 타당성이 담보된 이상 경북도청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병행하여 이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면 유보되고 있는 경상북도종합연수원 건립이 전면적으로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와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공무원교육원 이전과 연계하여 적

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상수도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래 없는 장기가뭍으로 인하여 경북의 곳곳에서 식수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농촌은 마실 물조차 부족한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뭍 속에 혹독한 식수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재난은 물이 새는 수도관만 고쳤어도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인재였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상수도 누수로 인해 지난 2007년 말 기준으로 연 767억 8,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한 2006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북의 상수도 누수금액은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전국 약 5,8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하여 543억 6,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경남이 804억원, 또 경기도가 708억원, 서울시 658억원 다음으로 낭비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북도내의 누수율은 22.3%로 전국 평균 14.2%의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도 전국평균 704.4원인데 비하여 경북은 721원으로 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와는 달리 도내 상수도보급률은 주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들은 경북의 상수도관리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누수량은 통계의 2배라는 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인 상수도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교육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반영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최근 3년간 교원 및 교육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에 따른 예산액은 2006년도에 13억 7,634만 3,000원이었다가 2008년도에는 16억 2,558만원으로 증액된 데 이어 2009년의 경우 교육청의 해외연수 예산은 모두 22억 1,520만원으로 2006년 대비 61%가 증액되었습니다. 갈수록 증액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도청의 경우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는 물론 국내연수까지 삭제하는 차에 교육청은 1인당 390만원씩의 비용으로 2006년에 6명, 2007년도에 14명, 2008년도에 11명이 국외연수를 하였고, 2009년도에도 5,070만원의 예산으로 13명이 국외연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퇴직공무원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로연수제가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후 예산으로는 관광성 여행을 갈 수 없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로연수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방공무원 해외배낭연수도 2006년과 2007년도에 각각 70명이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다녀왔고 2008년도에는 60명이 유럽, 오세아니아 등 1억 2,000만 원을 들여 다녀왔습니다. 2009년도에도 현재 1억 원의 예산으로 50명이 해외배낭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일자리를 나누고 급여를 삭감하는 등 고통분담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09년 4월 1일(수) 제232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권영만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영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후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심리라고도 합니다. 실물경기와 생활경제가 어렵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찾아 이겨나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 삶의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울수록 물질 뿐만 아니라 말 한 마디, 표정 하나라도 나누어서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도교육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4차 세계산림대회 봉화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10일 제2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5년 제14차 세계산림대회가 봉화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김관용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5분 발언에서 세계산림대회의 역사와 규모, 봉화 유치의 의미와 적합성, 직·간접적 파급효과, 그리고 향후 일정에 따른 조치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도 차원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본 의원은 제14차 세계산림대회가 봉화에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도지사께서는 지난 5분 발언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적 변화와 봉화의 여건과의 적합성입니다.

세계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동력 패러다임으로 보고 이의 주도권 경쟁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경쟁력은 에너지, 환경, 물, 지하자원 등 네 가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촌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생각하는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봉화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청정환경과 생태자원을 간직하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2013년 최고의 국립수목원 조성이 완료되면 유치지역의 적합성은 배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파급효과입니다.

국제대회 유치로 참가자와 관광객 방문에 따른 경제적 수입, 대한민국의 산림분야 위상과 이미지 제고, 세계속의 그린경북 브랜드화, 그리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봉화는 산림휴양지라는 세계적 관광지로의 부상 등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셋째, 봉화를 둘러싼 주변지역과의 연계 발전입니다.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울진의 친환경엑스포, 안동 탈춤축제, 영주 인삼축제 등 북부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연계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경북 북부지역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화군은 국립 봉화수목원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원 1명을 지난 2월 23일 산림청에 파견한 바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의 열악한 형편임에도 세계산림대회 유치 관련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와 산림청에서는 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화에서 촬영한 위낭소리가 전 국민을 감동하게 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늘 푸른 춘양목이 우리의 자긍심을 살려내고 있듯이 2015년 세계산림대회 최적지는 파인토피아 봉화입니다. 봉화의 위낭소리가 2015년 세계산림대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도지사께서는 대회의 봉화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 승부쓰레기매립장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승부매립장의 허가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및 운영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부매립장은 일반매립장으로 '95년 3월 31일에 경상북도가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민간업자에게 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15일에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개정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관리 업무가 봉화군에 위임되어 '96년 12월 24일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2001년 11월 15일 종료되었습니다.

매립장 전체 면적은 1만 4,200㎡에 21만 3,000톤이 매립되었습니다. 매립 내용물은 소각잔재물 5만 6,000톤, 폐수처리오니 5만 3,000톤, 폐합성수지 3만 5,000톤, 폐수·폐차 처리후의 광재, 분진, 슬러지 등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수집·운반된 폐기물입니다.

약 5년간의 매립과정에서 '봉화군과 사업자간 관련 법령 준수사항 위반' 등의 문제로 조치이행 명령 3회, 반입중지 명령 2회, 고발 3회, 개선명령 7회, 영업정지 2회, 소송 1회, 행정심판 3회가 발생하는 등 법적 공방이 있었으며, 매립종료 이후 관리업체는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사진에서 보았듯이 침출수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상당한 양이 옹벽을 넘어 계곡을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2007년부터는 봉화군에서 매립장의 침출수를 차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한편, 침출수의 일부는 다시 매립지 내로 재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송 처리된 양은 2007년에 120톤, 2008년에 380톤, 금년에는 290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집중호우 시에는 낙동강의 범람으로 차량 접근이 어려워 운송 처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양도 증가함으로써 매립장의 침출수는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나아가 매립장의 옹벽 붕괴 등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경부와 경상북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백두대간의 낙동강과 바로 인접해있는 청정지역인 석포면 승부리에 매립장을 조성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봉화지역에서도 접근성이 가장 어려운 산골짜기에 매립사업계획 적정 통보와 허가를 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앞서 사진에서 보았듯이 현재 민간 관리업자의 부도로 침출수 처리시설이 방치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관리비용은 고스란히 봉화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침출수의 이송처리비용을 보면 2007년 1억 2,000만원, 2008년 9,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도난 민간업자가 투자한 사후관리 보험금액은 2억 8,000만원으로, 이는 승부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조사 용역결과의 실제 사후관리 비용인 14년간 43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2007년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의 사후관리 대행을 위한 협의에서 실제 관리비용을 15년간 60억원을 요구하여 협의를 결렬되기도 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낙동강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후관리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에서 매립장 조성 사업계획의 적정 통보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승부매립장의 사후관리 비용을 봉화군만 부담하는 것은 도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2008년 2월의 환경영향조사 용역결과를 보면 집중호우 시 매립장의 중앙매립사면의 경사도가 불안정하여 붕괴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중의 증가와 우수 침투로 지반의 변형과 수압이 증가하여 붕괴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상층부의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복토와 함께 빗물이 스며들지 않

도록 하는 우수방지시설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봉화지역은 연평균 강우량이 2006년도의 경우 1,510mm로 7월에 절반인 751mm의 집중호우를 보였으며, 지난해 7월 25일에는 매립장이 있는 석포면 지역 1일 강우량이 375mm라는 기록적 집중호우가 내려 인명피해는 물론 가옥침수, 도로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집중호우는 해마다 거듭되고 있으며 강수량도 증가추세에 있어 이러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21만 3,000t의 매립쓰레기는 고스란히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옹벽보다 침출수의 수위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제방 축조 방법이 아니라 매립사면 방식으로 매립되어 호우 시 사면을 통한 빗물침투로 침출수 월류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매립장의 지하수 수질분석 결과를 보면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 질소, 총인 등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청정지역을 크게 초과한 침출수 월류로 인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와 같이 예상하기 힘든 자연재해와 매립조성 방식 때문에 매우 취약한 매립장의 안전한 관리대책과 수질오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라는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서면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농산어촌 중심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그리고 도의 지역중심학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어촌 중심학교 지원사업은 성적 상위권 학생의 타 지역 유출을 감소시키고 4년제 대학진학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력신장, 인성교육, 교사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04년 울진고, '05년 예천여고, '06년 군위여고외 4개 고교, '07년 성주고외 5개 고교가 선정되었으며 '04년부터 '06년까지 학교당 16억원을 지원하고 '07년도부터는 3년간 학교당 7억원과 도교육청에서 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 지원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여건개선 및 학생,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08년 8월에 도내 13개 고교가 선정되어 기숙사 건립과 시설비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333억 2,69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도·농간, 계층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유아 기관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습결손 치유예방,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심성개발, 지역네트워크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복지프로그램, 방과 후 문화활동 및 체험학습,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역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06년 구미시를 시작으로 '07년 포항시, 금년에 안동시와 영천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중심학교 지원사업은 지역 우수인재 유출방지 및 고교 집중 육성을 위해 시·군별로 1개 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역점을 둔 사업으로 보입니다. '08년에는 방과 후 특강, 방학 중 특별보충수업, 심화교육, 맞춤형 선택수업 등 19개 고교에 각 5,0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억원의 예산으로 23개 고교에 학교당 4,3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학교가 12개가 있습니다. 4개의 사업내용 중 3개 이상 중복되는 학교가 4개 고교(영양고, 울진고, 성주고, 봉화고)이며, 2개 이상 중복되는 학교는 8개 고교(안계고, 영해고, 대가야고, 군위고, 울릉중고, 예천여고, 의성여고, 약목고)입니다.

지원사업의 내용면에서도 농산어촌 중심학교 지원사업의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기숙사 신·증축 및 리모델링사업과 기숙형 공립학교 지원사업에서의 기숙사 신·증축사업이 중복되며, 농산어촌 중심학교 지원사업의 방과 후 자율학습 강좌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명사초청 특강,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교재개발 등의 사업과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중심학교의 방과 후 수준별 심화수업, 교재비 구입 지원, 외부초청 특강 등 거의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집중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인 4개 지원사업의 대상학교가 많이 중복되고 사업내용이 차별화 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대상학교의 중복에 따라 많은 예산이 같은 학교에 한정된 기간에 집중됨에 따라 해당학교에서는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학교의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기준으로 경북도내 학교의 교원 수는 1만 8,53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장애인 교원이 107명으로 전체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의 비교에서도 여섯 번째로 많은 장애인 교원이 임용되어 교육현장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등교원의 경우 2007년 16명, 2008년 24명, 2009년 32명을 임용할 예정이었으나 단 한명도 임용하지 못하였으며, 중·고등교원의 경우 2007년 12명 모집에 7명 임용, 2006년 14명 모집에 11명 임용, 2009년 12명 모집에 5명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모집 집단을 달리하고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임용률은 초등교원의 경우 전무하고 중·고등 교원의 경우 모집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내실있는 교육기회 부족과 나아가서는 대학교육에서의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 교원 응시자들이 교육학과 전공과목에서 40점 이하의 낮은 점수 때문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장애인 교원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장애인 교원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진단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과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장애인 교원 자원의 확대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 2009년 4월 1일(수) 제232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김지수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성주 출신 김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올바른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에다 높은 물가고로 여기저기에서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오고, 농민들은 인건비도 건지지 못해서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의 지방경제 동향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대구·경북권의 소비심리가 더 위축되어 있고 가계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문을 비롯한 언론지상에서 가장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소식이 연일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2만 8,000명으로 '96년 실업급여가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는 사상 유래 없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나누기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행정인턴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청 경상경비 87억원을 절감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신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현재 80여 명의 인턴이 3주 전부터 도청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기술원 등 직속기관이나 산하기관 단체에서도 별도로 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과는 주로 서류복사, 잔심부름, 잡일 등 단순 업무를 처리 하면서 취업 시험공부나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행정인턴제가 그저 임금을 나누어주는 선심성, 일과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숫자나 늘리자는 식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방침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고 낭비되는 것 같아 착잡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행정인턴은 공공기관보다는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기업 등 실제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금의 위기 극복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선기업에 우선적으로 행정인턴을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10개월짜리 행정인턴제는 공공근로와 같이 단기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만 확대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턴제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습사원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장기적 측면에서 인턴제를 상설 기구화 하는 방안이 점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방안을 갖고 대처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 일자리 창출과 귀농인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도지사님께서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도시 실업자 등의 잠재 노동 인력을 농업·농촌 분야로 유입해서 실업을 해소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미래 농업·농촌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창출하도록 체계적인 귀농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농촌 살리기에 공을 들였지만 농촌은 점점 피폐해가고 나이든 노인들만 농촌을 지키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의 연령은 점점 높아지는데도 젊은층은 힘든 농사를 피해서 농촌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많은 젊은층이 농촌으로 귀농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이 경상북도의 귀농인구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98년 1,171가구로 IMF 직후 일시 증가한 후, 2002년 218가구, 2003년 86가구로 경제회복으로

감소하다 지난 2004년 334가구, 2006년 378가구, 그리고 작년 2008년에는 485가구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가 호전될 때는 귀농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귀농인구는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도별 귀농 농가수를 보면 경북, 경남, 전남, 전북, 강원도의 순으로 전국에서 경북의 귀농인수가 가장 많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실업률이 높은 이때 농촌으로 젊은 인구를 유입하여 젊은 농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농사일도 직업의 한 부류인 만큼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농촌 일자리 창출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청년실업난 해소 관련 예산을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활용하여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께서도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 귀농인들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종가문화 관광 명품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종가 및 종가문화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북 종가문화 명품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북 종가문화 명품화 사업은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이농과 도시집중으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종손·종부의 고령화로 종가문화가 급격하게 훼손·소멸되고 있어서 종가문화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문종가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중요한 만큼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명문종가와 주변유적을 연계하는 관광테마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타지역에 우리 경북을 홍보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확고한 역사의식과 가치관 위에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사업시작 수년 후 타지역간 관광객

유치경쟁 격화시점에 도달할 즈음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관광객 수도 감소하고 중도에 문화재만 더 훼손시켜 그동안 투자했던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준비를 갖춘 뒤 사업에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떤 기준에 바탕하여 명문종가를 선정할 것입니까?

둘째, 여러 명문종가에서 서로 으뜸간다고 앞 다퉈 주장할 때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근거하여 선별할 것입니까?

셋째, 명문종가에 시설보수를 하고 나면 관광객과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데, 문화재가 상업적 분위기에 물들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처음에는 편의시설을 관광객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경우 편의시설의 확장으로, 당초 사업의 취지인 ‘명문종가 유지보수’가 ‘명문종가 개발’로 변질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종가문화와 관련한 음식, 제례, 복식, 민속, 종부·종녀 생활사를 엮어서 ‘경북지역 종부 생활사’를 책으로 출판할 경우, 그 후손들의 입김에 따라 해당 종가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책에 기술될 개연성이 있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그리고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전기 없는 자연회귀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기 없는 자연회귀마을은 현대문명을 거부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느리게 살아가는 우리 조상의 옛 문화와 전통을 재현하고 친환경 체험을 통해 정신건강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간 총사업비 3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박한 산업사회 속에서 도시민들의 전기 없는 생활을 체험하고 정서치유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업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전기 없는 생활체험을 위해 인위적으로 두세 개의 전기 없는 마을을 조성하고, 마을당

서너 채의 황토방과 황토망댕이 가마를 신축한다고 해서 본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운영방식, 프로그램 개발, 시설기준 등의 기본계획은 현재 용역을 줘서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주체가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다 보면 농외소득 증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상업적으로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생활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망감만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도내 전기 미공급지역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7년말 기준으로 5가구 이상 지역은 청송군과 봉화군에 있고, 최소 1가구 이상 지역은 10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전기 미공급지역은 작게는 1가구에서 많게는 5가구이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1명에서 6명 안팎에 불과한 오지마을입니다. 전기 미공급지역을 16개 시·도별로 보면 강원도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많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전기 있는 마을 주변에 전기 없는 마을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실제로 전기가 없는 지역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친환경 체험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나은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 전기 없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사휘발유 판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이 전국 최대 유사휘발유 유통지역으로 부각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유사휘발유는 전국적으로 369만 9,935리터입니다. 이는 2007년 182만 2,354리터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 중 경북에서 압수된 유사석유제품의 양은 191만 4,623리터로 전국 압수물량의 52%에 해당되며, 경산, 영천 등지에서 만든 양이 대부분입니다.

작년 한해 유가급등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사석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은 엄연한 불법이며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도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문란을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서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 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제별 평가내용은 반부패 인프라 구축,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영향평가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 활성화, 부패교육 및 홍보, 자율시책 평가 등 7개 분야였습니다.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였는데 경북교육청은 단 한 개 분야에서도 우수를 받지 못했으며, 종합평가에서는 하위 20%에 속하는 미흡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등이 보통 또는 보통 이상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여간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경북교육청이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평가에서 85개 공공기관 중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미흡 판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7개 평가 분야에서도 단 하나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올수록 사랑과 배려로써 도정과 교육행정을 펼치셔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가 작은 일에도 애정을 갖고 정성을 쏟는다면 작은 정성들이 모여 마침내 큰 소망을 이루리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9년 4월 1일(수) 제232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김영만 의원(농수산위원회) ◎

존경하는 김응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군위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영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승빈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끝 모를 경기침체 속에 소득감소와 물가압박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추경예산의 많은 부분을 서민경제 살리기에 투입하는 등 여러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처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흔히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라 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민의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의 최 일선에서 온갖 궂은일에 팔을 걷어 부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이장과 통장의 노고가 가려져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북도내에서는 2008년도 현재 7,753명의 이·통장이 도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우는 매우 열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각 시·군들은 이·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바,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인당 평균 약 88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별로 차이가 많아 울진군의 경우 1인당 177만원을 지급하는 데 반해, 상주시는 17만 2,000여원, 울릉군은 지급한 사실 조차도 없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에서도 2008년을 기준으로 안동, 경산, 문경, 상주, 김천, 울진, 봉화, 고령, 영덕, 영양, 청송, 의성 12개 시·군은 가입을 했으나, 나머지 포항,

군위, 청도 등 11개 시·군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액도 시·군에 따라 최고 9만원대에서 최하 4만원까지 들쭉날쭉한 형편입니다. 이는 사기를 떨어뜨림은 물론, 직무수행에 따른 각종 위험과 사고 대비책이 소홀하여 적극적인 활동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으로 지급되는 비용도 안동은 지금 사실조차도 없고, 울진은 31명에게 1인당 132만원, 김천과 예천은 1명에게 100만원, 군위·칠곡의 경우 21명에게 1인당 95만원 정도를 이·통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의 인센티브 지급액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각출하는 이장수고비, 즉 준조세적 성격의 모곡제가 여전히 일제 잔재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현재 청송, 고령, 칠곡, 울릉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에 남아있는 모곡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을 제대로 전달, 홍보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에 알려 시책수립에 반영시키는 이·통장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 및 복지혜택 부여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생활 여건 향상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지난 1976년부터 노후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개량이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장기 저리로 주택개량자금을 융자지원 함으로써 2008년까지 9만 3,174동의 농어가 주택을 개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가 주택개량 융자금 배정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009년까지 주택개량사업 평균 융자금 신청농가는 1,709호인 데 비해 지원농가는 874호에 지나지 않아 51%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가 주택개량 융자금이 수요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물가상승, 환율급등으로 건축비가 크게 늘어나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되

고 있는 바, 주택개량 융자금의 동당 대출한도액인 4,000만원을 상향조정하고, 금리도 현재 연리 3%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배정도 주택건축의 적기인 봄철이 끝나가는 5월경에 이루어지고 있어 건축이 가을로 연기되거나 이듬해로 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업물량을 2월말까지 조기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조기집행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건축물이 완공되고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해 다른 금융권에서 임시 융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융자금 대출도 건축진도에 따라 융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댐 건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년 대비 절대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경북 곳곳이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확보와 가뭄대책을 위해 우리 경상북도는 군위 고로, 김천 부항, 청송 성덕 등 3개 댐의 조기준공과, 계획단계인 영덕 달산, 영주 송리원, 영천 보현 등 3개 댐의 조기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댐 건설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전면적이고도 적극적인 추진은 환경파괴 등을 염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댐 건설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방법과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갈등과 분쟁 해소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자원 확보 등의 이유를 내세워 댐 건설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막대한 농산물 피해 등을 겪을 농민들의 하소연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제 안동, 영양, 청송 등지에 크고 작은 댐들이 건설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는 안동 등 중북부 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댐만도 무려 8곳입니다. 안동, 임하, 영천댐은 가동 중이며, 화북·부항·성덕댐은 건설 중이고, 달산·송리원·보현댐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청송과 예천에는 각각 양수발

전소 2기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경북의 중북부 지역에 전국에서 유례없는 댐과 양수발전소가 집중되면서 농산물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동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안동지역 각종 농작물 수확량 감소는 안동·임하 댐 건설 이후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생태계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간 안개 발생일수, 안개 지속시간 등은 증가하고, 맑은 날 일수와 연간 일조시간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댐 인근지역인 안동 예안과 임동에서는 안개와 서리의 발생이 증가해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출수기의 안개가 벼의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농작물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수자원 확보라는 미명 아래 새로이 건설되는 군위 고로댐을 비롯한 크고 작은 댐이 경북의 중북부에 집중 건설될 것에 대비하여 농작물 피해와 인간생활의 영향까지 종합적인 조사·분석은 물론, 재배단지의 변경, 작목전환 등이 포함된 피해 예방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며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신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명동성당에는 40만명 이상의 추모객이 찾았고, 천주교 안팎에는 사랑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5일 고 김수환 추기경 묘소에서 마지막 추모미사를 계기로 공식적인 추모행사가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분의 고귀한 삶과 뜻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더 많아지리라 봅니다.

서울대교구에서는 이름을 내세우거나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을 원치 않았던 추기경 생전의 유지를 받들어 별도의 기념관 건립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모공원 사업을 통하여 고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삶의 흔적과 고귀한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가르침을 계승하여 생명존중 정신을 구현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추모공원 건립은 권장하고 환영해

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어린시절을 보냈던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 옛집에는 하루 평균 250여명 정도의 추모객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참배객은 추기경의 옛집에서 그분이 남긴 큰 뜻인 감사와 사랑을 화재로 이야기를 나누며 정신을 되새깁니다. 군위성당 사목평의회에서는 참배객이 늘어나자 용대리 옛집이 생가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생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고 김수환 추기경의 큰 사랑과 뜻을 기리려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세속적인 것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군위군에서는 김 추기경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군위읍 용대리 옛집 주변 30만여㎡에 기념관과 동상, 추모비 등이 들어서는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위읍 용대리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마을 진입로가 좁고 선형이 심한 데다 주차장마저 없어 참배객들의 불편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실제 추모공원 건립 예상비용 300억원도 대부분 진입로 포장 등 기반정비사업에 쓰일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 김수환 추기경의 큰 뜻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기리고 고귀한 정신과 삶의 자세를 후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천주교와 협의하여 추모공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흡연 및 음주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음주와 흡연은 성인의 경우에 비해 신체적 건강과 성장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담배는 건강에 해로움은 물론 냄새, 간접흡연 피해 등으로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자기 집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하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거리, 광장, 공원, 학교 앞 등 사람들이 모이는 실외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대구 동성로 일부 거리도 금연거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적당량의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일부의 논리로 술을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음주 습관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인보다 더 나쁜 청소년기의 흡연과 음주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적절한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08년 전국 청소년의 흡연율은 10.8%로 나타났는데 우리 경북은 14.5%로 충남의 16.7%, 광주 14.9%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음주를 경험한 비율은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이 53.7%인데 경북은 6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도내 청소년 흡연과 음주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의 흡연이 대부분 성인들의 모방심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내의 초·중·고 교사들부터 금연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9년 현재 도내 2만 2,730명의 전체 교사 중 흡연자는 2,969명으로 13.1%인데 교사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 록

☐ 조례안 : 11건

☐ 승인·동의안 : 2건

☐ 결의안 : 2건

☐ 기 타 : 3건

☐ 종합심사보고서 : 2건

□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4월 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262명”을 “4,3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50명”을 “1,881명”으로 하며, 제2호 중 “2,272명”을 “2,310명”으로 하고, 제3호 중 “42명”을 “41명”으로 한다.

별표2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비율	6%이내	21%이내	36%이내	34%이내	3%이상

비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7명(4급 1, 5급 1, 6급 1, 7급 4)은 제외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4,262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850명</u>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 공무원의 정원 : <u>2,272명</u>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u>42명</u> 4. (생략) [별표2]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d>구분</td><td>4급이상</td><td>5 급</td><td>6 급</td><td>7 급</td><td>8·9급</td></tr><tr><td>비율</td><td><u>6%이내</u></td><td><u>20%이내</u></td><td><u>35%이내</u></td><td><u>34%이내</u></td><td><u>5%이상</u></td></tr></table>	구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비율	<u>6%이내</u>	<u>20%이내</u>	<u>35%이내</u>	<u>34%이내</u>	<u>5%이상</u>	제2조(정원의 총수)<u>4,330명</u>..... 1. : <u>1,881명</u> 2. : <u>2,310명</u> 3. : <u>41명</u> 4. (현행과 같음) [별표2]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d>구분</td><td>4급이상</td><td>5 급</td><td>6 급</td><td>7 급</td><td>8·9급</td></tr><tr><td>비율</td><td><u>6%이내</u></td><td><u>21%이내</u></td><td><u>36%이내</u></td><td><u>34%이내</u></td><td><u>3%이상</u></td></tr></table>	구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비율	<u>6%이내</u>	<u>21%이내</u>	<u>36%이내</u>	<u>34%이내</u>	<u>3%이상</u>
구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비율	<u>6%이내</u>	<u>20%이내</u>	<u>35%이내</u>	<u>34%이내</u>	<u>5%이상</u>																				
구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비율	<u>6%이내</u>	<u>21%이내</u>	<u>36%이내</u>	<u>34%이내</u>	<u>3%이상</u>																				

[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 계		4,330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1,365	-			
	2~3급	1		1		
	3 급	9	8		1	
	3~4급	1	1			
	4 급	69	49	7	4	9
	5급이하	1,285	-			
별 정 직	소 계	43	-			
	1급상당	1	1			
	3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이하	38	-			
연 구 직	소 계	188	-			
	연구관	28			27	1
	연구사	160	-			
지 도 직	소 계	27	-			
	지도관	8			8	
	지도사	19	-			
소 방 직	소 계	2,310	-			
	소방정	18	2		16	
	소방령이하	2,292	-			
기능직 계		355	-			
교 원	소 계	41	-			
	학 장	1			1	
	교 수	29			29	
	조 교	11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4월 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1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어업기술센터

제70조(설치) ①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어업 기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이하 “어업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어업기술센터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번지에 둔다.

제71조(소장) 어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2조(지소) 어업기술센터에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소득개발 및 보급지도
2. 어장예찰 및 수산재해예방지도
3. 수산자원회복 및 육성지도
4. 어업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별표2 중 성주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성주소방서란 다음에 고령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주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9	성주군 일원
고령소방서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170	고령군 일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민헌장제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국장·기획관”을 “실국장·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투자심사계장”을 “재정계획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담당”을 “재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환경산림국장, 사회복지

지여성국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본부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산팀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재정과장, 관광진흥과장, 보건위생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 관광산업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예산팀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혁신법무팀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혁신법무팀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실과담당계장”을 “실과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조·제6조제1항 중 “혁신법무팀”을 각각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경제기획팀장”을 “경제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 ⑬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경제기획팀장”을 “경제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 ⑭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한다.
- ⑮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대중교통업무담당본부·국장”을 “대중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 ⑯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물가대책담당본부·국장”을 “물가대책담당국장”으로 한다.
- ⑰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담당본부장”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 ⑱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⑲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⑳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조·제5조제1항·제5조제2항·제6조제1항·제6조제2항·제18조제1항·제18조제2항 및 제19조 중 “정보화업무담당팀장”을 각각 “정보화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㉑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통상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중 “본부장 또는 국장”을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 “투자유치담당팀장”을 “투자유치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4조제1항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각각 “투자통상국장”으로 한다.
- ㉒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3호 중 “지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12조제3항 중 “업무담당 본부·실·국장”을 각각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 ㉓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통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용노사지원팀장”을 “기업노사지원과장”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통상국장”으로 한다.
- ㉔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 ㉕ 경상북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 ㉖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계장”을 “문화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㉗ 경상북도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 ㉘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4조 및 제27조제2항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각각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 ㉙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하고, “문화예술산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 ㉚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재과장”으로 한다.
- ㉛ 경상북도특산품디자인및포장개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관광산업진흥본부장”을 “관광산업국장”으로 하고, 제24조 중 “관광산업팀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

③②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정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③③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농수산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농지개량과”를 “농촌개발”로 하며, 제4조제3호 중 “기반조성과장”을 “농촌개발과장”으로 하고, “기반정리계장”을 “기반조성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④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수산국장, 건설도시재난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진흥국장, 행정지원국장, 농수산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③⑤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환경기획계장”을 “환경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⑥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③⑦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하고, “회계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③⑧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통상국장”으로 한다.

③⑨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으로 한다.

④⑩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① 경상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8조 중 “보건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④②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예산담당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③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환경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계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④④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④⑤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본부장·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④⑥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⑦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건축지적과장”으로 한다.

④⑧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본부장,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한다.

④⑨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① 경상북도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⑤②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상북도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작물지도과장, 소득지도과장”을 “지도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촌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도국장”을 “기술지원국장”으로 한다.

⑤② 경상북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립대학운영조례”를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5조”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6조제1항”으로, “경상북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경북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6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조·제10조·제31조제3호·제32조제3항 및 제40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⑤③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상북도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경상북도산림생태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소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학장) 대학에 <u>학장</u>을 두며, <u>학장</u>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u><신 설></u>	제35조(총장) ……총장……, 총장… …………… …………… …………… 제11절 어업기술센터 제70조(설치) ①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어업 기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이하 “어업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어업기술센터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번지에 둔다. 제71조(소장) 어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2조(지소) 어업기술센터에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소득개발 및 보급지도 2. 어장예찰 및 수산재해예방지도 3. 수산자원회복 및 육성지도 4. 어업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현행			개정안		
[별표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	⋮	⋮	⋮	⋮	⋮
성주 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9	성주군 일원, 고령군 일원	성주 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9	성주군 일원
<신설>			고령 소방서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170	고령군 일원
⋮	⋮	⋮	⋮	⋮	⋮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4월 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인사교류”를 “인사교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장간의 협의 또는 도지사의 권고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 당해 의료원장은 즉시 인사교류 협의에 착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4월 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 이라 한다)을” 을 “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 이라 한다)을”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 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조례 제3053호(2008.7.17)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으로 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登記하는” 을 “2010년 6월 30일까지登記하는” 으로 하며, 제3조 중 “2009년 6월 30일까지” 를 “2010년 6월 30일까지” 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登記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③(적용시한)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략)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단서 삭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래세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함.
다만,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 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 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 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 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 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 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 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 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 양 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 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 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부칙(2008.7.17 조례 제3053호) ①(생략)	부칙(2008.7.17 조례 제3053호) ①(현행과 같음)	조례 제3053호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

②(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u>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u>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u>2009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u>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u>2009년 6월 30일까지</u> 적용한다.	②(적용례).....<u>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u>.....<u>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u>..... ③(적용시한).....<u>2010년 6월 30일까지</u>.....	개정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함.
---	--	------------------------------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4월 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실시로 환경보전 마인드 증진과 실천의지 배양 및 환경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①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③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민들의 환경보전의식 증진을 위한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
2. 공직자·교원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전문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
3.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체험교육
4.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환경관련 위탁교육 및 연구용역
5. 환경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6. 도지사가 정하는 환경교육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법인에 대한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등의 수입

제5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 ①도지사는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도지사는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인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

소로 해산한다.

②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11조(권한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4월 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통해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의거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특화항로”란 포항시장이 경상북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정기적인 항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국제항로를 말한다.
5. “1차연도 화물”이란 최초지원대상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6. “2차연도 화물”이란 1차연도 다음날부터 1년간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7. “순증화물”이란 최근 2년내에 처리한 화물의 평균 실적대비 순수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단, 2차연도 순증화물은 1차연도 화물 실적대비 순수하게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포항시장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

②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다른 항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포항영일만항(이하 “영일만항”이라 한다)에 연장 기항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손실에 대한 항로연장지원금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특화항로 개설에 따른 정기적인 항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운항손실금
3.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이용장려금

제4조(지원기준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고,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마다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개설일부터 3년내로 한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특화항로 개설운영에 따른 운항손실금 보조는 포항시장과 정기항로 개설·운항 협약을 체결한 선사에 대하여 유류비, 용선료 등에 대해 지원하되, 연간 운항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개설일부터 2년내로 한다.
3.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용장려금은 화물에 대해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되, 1차연도는 100퍼센트, 2차연도부터는 순증화물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나머지 처리화물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지원하고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기간은 연간 처리화물량이 20만 티이유(TEU)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항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도지사는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정산 등) 포항시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도지사는 영일만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지원기준(제4조 관련)

1. 항로연장지원금 1TEU당 지원금액

가. 항차당 100TEU미만 적취시 (적취 보조)

- 1TEU당 지원금액 = (추가해상운임+항만시설사용료+하역비) × 50%
- 지원 물량 = 100TEU - 적재 물량

나. 항차당 100TEU이상 적취시 (하역비 보조)

- 1TEU당 지원금액 = 하역비 × 50%
- 지원 물량 = 적재 물량

2. 이용장려금 1TEU당 지원금액

구 분	유치물량(6개월간)	지원금액 (원/TEU)
이용장려금	199 TEU이하	30,000
	200~499 TEU	33,000
	500~1,499 TEU	35,000
	1,500~2,999 TEU	38,000
	3,000 TEU이상	40,000

경상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4월 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4월 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를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시행
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교육 · 학예에 관한보조금관리조례	경상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u> 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 <u>지방재정법시행령</u> 」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4월 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5,139명”을 “4,882명”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125명”을 “4,86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청 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139명</u> 으로 그 내역은 다음 <u>각호</u> 와 같다. 1. (생략)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 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학교 정원 : <u>5,125명</u>	제2조(정원의 총수)----- ----- <u>4,882명</u> ----- <u>각 호</u> -----. 1. (현행과 같음) 2.----- ----- ----- : <u>4,868명</u>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4월 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수출품”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내지 제8호에서 정의하는 농산물과 식품 및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어업생산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라 함은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가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3. “신선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농작물재배업에서 얻어진 생산물 및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을 박피, 건조, 절단 등의 일체의 가공과정을 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축산물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은 제외한다.

제3조(도지사 및 농어업인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0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및 식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

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지원
 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6. 기타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지원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6. 선·후발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네트워크(Net-Work)형성 지원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우리도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유통활성화 지원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지원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지원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 ② 도지사는 수출검역의 절차간소화를 위해 필요시 수출대상국의 검역관 초청을 적극 알선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신선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지원
5. 기타 도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도지사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군,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기타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농수산물수출촉진협의회)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수출촉진 시책에 대한 자문
2.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3. 기타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4월 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의정연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u>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 지원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검토·자문하기 위하여 <u>경상북도의회의정연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생략) 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 (생략) 4. <u>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5. 기타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u>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u> 제1조(목적)<u>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u>..... 제9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1.~ 3. (현행과 같음) <u>〈삭제〉</u> 4. (현행 제9조제2항제5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① (생략)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의회자문교수운영조례에 의거 위촉된 자문교수는 이 조례에 의거 <u>의정연구위원회</u>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경과조치) <u>위원회</u>

□ 승인 · 동의안

- 2009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잡종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9. 3. .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대일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구미 부품소재전용공단(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를 매입하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
-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내 부지 255,469m² 지분매입
(국 75%, 도 12.5%, 구미시 12.5%)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3. 주요골자

- 취득재산
 - 토 지 : 1건, 255,469m² 중 31,934m²

4. 취득재산의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건 명	면 적	추 정 액	용도 및 필요성
취득	소 계 토 지 건 물	31,934㎡ 31,934㎡	4,733,521 4,733,521	
	구미 부품·소재전용공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255,469㎡ 중 31,934㎡	4,733,521 (지분해당액)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 총액 37,868,170

5.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5. <<생략>>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 ⑩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①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자금의 지원항목 및 지원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가가 매입하는 토지의 비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100분의 40, 기타지역의 경우는 100분의 75

2. ~ 6. 《생략》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09년도 수시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25,400m ² 31,934m ²	4,733,521 (지분해당액)				1	25,400m ² 31,934m ²	4,733,521 (지분해당액)	
	1.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25,400m ² 31,934m ²	4,733,521 (지분해당액)				1	25,400m ² 31,934m ²	4,733,521 (지분해당액)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2009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illegible]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집중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9. 3. .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사유

- ☐ 경상북도가 21C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 ☐ 경상북도의 집중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무상대부 내용
 - 대 부 재 산
 - 토 지: 52필지 75,479m² • 건 물: 15동 5,776.9m²
 - 대 부 목 적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재산
 - 대부받는자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이사장 : 이삼걸)
 - 대 부 기 간 : 2009. 05. ~ 2014. 05.(5년간)

☐ 무상대부의 필요성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도민들의 환경보전 및 실천마인드를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기관으로서 환경교육의 메카로 재도약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사업을 위해 경상북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향후 자립경영이 확보될 때까지 무상 대부하고자 본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함.

3. 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집중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집중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 재산의 표시

구분	무 상 대 부 재 산	면 적(m ²)
토지	구미시 남통동 산29 외 51필지	75,479
건물	구미시 남통동 207-2 A동(본관) 외 14동	5,776.9

※ 무상대부재산목록 별첨

☐ 대부기간 : 2009. 05. ~ 2014. 05(5년간)

☐ 대부목적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재산

☐ 대 부 료 : 면제

☐ 대부 받는 자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이사장 : 이삼걸)

<별첨>

무상대부 재산목록

■ 토 지 : 52필지 75,479m²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 적(m ²)	비고
	위 치	지 번			
1	구미시 남통동	산29	임	16,580	
2		산30-1	임	5,424	
3		산33-8	임	1,096	
4		산33-9	임	288	
5		산130-1	도	184	
6		189	답	1,094	
7		191-1	대	671	
8		191-2	답	3,104	
9		191-3	답	1,531	
10		192	답	2,367	
11		192-2	답	601	
12		192-3	답	1,191	
13		193	묘	529	
14		194-1	전	2,136	
15		194-2	묘	826	
16		195	답	2,664	
17		196	전	1,203	
18		197-1	답	2,962	
19		197-2	유	598	
20		198	임	714	
21		199-1	임	407	
22		199-2	답	387	
23		200-1	임	393	
24		200-2	답	1,722	
25		201-1	답	926	
26		201-2	전	562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 적(m ²)	비고
	위 치	지 번			
27	구미시 남통동	202-1	임	909	
28		202-2	대	152	
29		202-3	답	6,367	
30		203-1	전	47	
31		203-3	전	932	
32		204	전	1,488	
33		205-1	전	1,164	
34		205-2	임	1,250	
35		206	임	66	
36		207	답	694	
37		207-1	답	1,646	
38		208-2	답	1,204	
39		208-3	답	229	
40		208-5	임	21	
41		208-6	답	762	
42		208-7	임	288	
43		209	답	1,134	
44		210	답	850	
45		211	답	711	
46		212-1	답	569	
47		212-2	전	569	
48		212-3	대	225	
49		213	답	1,507	
50		214	답	1,226	
51		214-1	임	301	
52		214-2	임	1,008	

--	--	--	--	--	--

■ 건축물 : 15동 5,776.9m²

연번	소 재 지	건축물 명칭(용도)	연면적 (m²)	비고
1	구미시 남통동 207-2 외 31필지	A동 (본관)	1,544.1	
2		B동 (자연사박물관)	399.9	
3		C동 (종합교육관)	3,172.1	
4	구미시 남통동 214	나동(가족교육관‘라’)	64.8	
5		가동(가족교육관‘다’)	64.8	
6	구미시 남통동 214-2	나동(가족교육관‘나’)	64.8	
7		가동(가족교육관‘가’)	64.8	
8	구미시 남통동 산 29 외 49필지	화장실(홍보관)	28.8	
9		사무실(홍보관)	153.2	
10		관리실(야외종합교육장)	18.0	
11		화장실(식물원)	13.8	
12		휴게소(취영정)	70.0	
13		휴게소(홍보관)	50.0	
14		화장실(야영장)	28.8	
15		휴게소(진덕정)	39.0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부 기간관련 : 제29조 단서 -

제31조 (대부기간)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2. 제1호외의 재산 : 1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대부받은 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이 종료된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대부 기간관련 :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 -

제34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잡종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 대부료 감면관련 : 제34조 제1항 제2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대

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때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6.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때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토지와 이해관계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10. 대장가액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12.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13.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때
15.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
16.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17.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때
18.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19.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때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때
2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때
2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의 사용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때
2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때

②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
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또는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사유건
물이 있는 부지로서 경계에 건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
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3. 공유재산의 지분

4. 재해복구 그 밖에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
로 대부할 수 있다.

1. 삭제 <2006.12.30>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
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
지를 사용하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2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2. 대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액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⑥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당해 재산을 대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국제경기장·국제회의장·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의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그 용도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대부료납부 가능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부 기간관련 :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18호 -

제35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법 제34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 대부료 감면관련 : 제35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공익법인 등의 범위 : 제12조 제7호 -

□ 결 의 안

-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301
----------	-----

제안연월일 : 2009년 3월 25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경상북도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의회차원에서 체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자 함.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과 각종 투자유치 및 경제지원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

3. 내 용

-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 추천으로 한다.
- 위원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
으로 한다.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302
----------	-----

제안연월일 : 2009년 3월 25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경상북도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2. 제안이유

- 경북발전의 백년대계인 도청이전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회를 비롯한 전 도민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때임
- 따라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집행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정치적 가교역할을 담당하고자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

3. 내 용

-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1명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 추천으로 한다.
- 위원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
로 한다.

□ 기 타

- 경제살리기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안 번호	303
----------	-----

제 안 일 : 2009. 4. 7

제 안 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경제살리기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추천근거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경제살리기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구성 : 7명

□ 추천명단

상임위원회	성명	비고
기획경제	황상조	경산
행정보건복지	김대호	구미
〃	송필각	칠곡
교육환경	김지수	성주
통상문화	박병훈	경주
〃	한혜련	영천
건설소방	장두욱	포항

※ 표기 순서는 상임위 · 가나다 순임.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추천근거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구성 : 11명

□ 추천명단

상임위원회	성명	비고
기획경제	정 경 구	안 동
행정보건의복지	김 종 천	영 주
교육환경	권 인 찬	안 동
농수산	박 노 욱	봉 화
〃	윤 영 식	예 천
〃	조 동 만	영 양
통상문화	박 순 열	청 도
〃	백 영 학	김 천
건설소방	고 우 현	문 경
〃	이 현 준	예 천
〃	장 병 익	군 위

※ 표기 순서는 상임위 · 가나다 순임.

의안 번호	306
----------	-----

제 안 일 : 2009. 4. 7

제 안 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추천근거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의 원 명	상임위원회	비 고
김 지 수 (교육환경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성 주

□ 종합심사보고서

-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3. 31(화)

2009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 합 심 사 보 고 서



경 상 북 도 의 회

목 차

1. 소관기관	
2. 심사경과	
3. 제안설명 요지	
4. 예산편성 방향	
5. 예산(안)	
6. 검토의견	
7. 질의 및 답변요지	
8. 토론요지	
9. 심사결과	
10. 소수의견 요지	
11. 기타 필요한 사항	

2009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지사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3. 13, 경상북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3. 26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 3. 26 : 상정 · 질의 · 토론)
 -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 3. 27 : 상정 · 질의 · 토론)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 3. 30 : 상정 · 토론 ·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 현 기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4. 예산편성 방향

-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봄 가뭄 대책에 중점 편성
-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추가분 반영
- 구조 조정을 통한 절감예산 『도민의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사업』 등에 활용
- FTA 대응 농어촌 경쟁력 강화 지원, 재정보전금 및 중앙지원사업 도비 부담금 등 필수 법정경비 최소 반영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815,710	100.0	4,576,610	100.0	239,100	5.2
일 반 회 계		4,101,400	85.2	3,863,300	84.4	238,100	6.2
특 별 회 계		714,310	14.8	713,310	15.6	1,000	0.1
	의료급여기금운영	356,764	7.4	356,764	7.8	0	0.0
	치 수 사 업	27,100	0.6	26,100	0.6	1,000	3.8
	경북도립대학운영	7,409	0.2	7,409	0.2	0	0.0
	광 역 교 통 시 설	907	0.1	907	0.1	0	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6,830	1.0	46,830	1.0	0	0.0
	지역개발기금운영	275,300	5.7	275,300	6.0	0	0.0

2) 총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815,710	100.0	4,576,610	100.0	239,100	5.2
자 체 수 입	1,187,907	24.7	1,168,334	25.5	19,573	1.7
지방세 수입	760,000	15.8	760,000	16.6	0	0.0
세 외 수 입	427,907	8.9	408,334	8.9	19,573	4.8
경상적수입	63,797	1.3	73,734	1.6	△9,937	△13.5
임시적수입	364,110	7.6	334,600	7.3	29,510	8.8
의 존 수 입	3,627,803	75.3	3,408,276	74.5	219,527	6.4
지방교부세	888,098	18.4	804,615	17.6	83,483	10.4
보 조 금	2,542,705	52.8	2,446,661	53.5	96,044	3.9
지 방 채 및 예치금 회수	197,000	4.1	157,000	3.4	40,000	25.5

3) 총괄 세출예산

가) 기능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815,710	100.0	4,576,610	100.0	239,100	5.2
일 반 공 공 행 정	780,607	16.2	741,555	16.2	39,052	5.3
공공질서및안전	223,317	4.6	200,729	4.4	22,588	11.3
교 육	5,210	0.1	5,210	0.1	0	0.0
문 화 및 관 광	221,758	4.6	209,206	4.6	12,552	6.0
환 경 보 호	366,706	7.6	346,389	7.6	20,317	5.9
사 회 복 지	1,385,514	28.8	1,361,775	29.8	23,739	1.7
보 건	64,221	1.3	58,131	1.3	6,090	10.5
농 립 해 양 수 산	774,653	16.1	734,485	16.1	40,168	5.5
산 업 중 소 기 업	142,887	3.0	121,827	2.7	21,060	17.3
수 송 및 교 통	306,875	6.4	257,636	5.6	49,239	19.1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00,939	4.1	195,695	4.3	5,244	2.7
과 학 기 술	12,920	0.3	12,895	0.3	25	0.2
예 비 비	46,577	1.0	46,577	1.0	0	0.0
기 타	283,526	5.9	284,500	6.2	△974	△0.3

나) 조직별(총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815,710	100.0	4,576,610	100.0	239,100	5.2
의 회 사 무 처	12,220	0.3	12,244	0.3	△24	△0.2
공 보 관	1,889	0.1	1,939	0.1	△50	△2.6
새 경 북 기 획 단	21,024	0.4	20,224	0.4	800	4.0
도청이전추진단	2,178	0.1	2,245	0.1	△67	△3.0
기 획 조 정 실	492,064	10.2	492,367	10.8	△303	△0.1
경제과학진흥국	147,569	3.1	143,001	3.1	4,567	3.2
공 무 원 교 육 원	4,660	0.1	4,673	0.1	△13	△0.3
감 사 관 실	381	0.0	381	0.0	0	0.0
보건복지여성국	1,436,268	29.8	1,411,266	30.8	25,002	1.8
행 정 지 원 국	412,055	8.6	381,040	8.3	31,015	8.1
경 북 도 립 대 학	7,409	0.2	7,409	0.2	0	0.0
환경해양산림국	593,806	12.3	559,935	12.2	33,871	6.1
보건환경연구원	7,207	0.2	7,230	0.2	△22	△0.3
농 수 산 국	554,124	11.5	527,799	11.5	26,325	5.0
농 업 기 술 원	39,607	0.8	38,228	0.8	1,379	3.6
투 자 통 상 국	53,478	1.1	31,425	0.7	22,053	70.2
관 광 산 업 국	30,851	0.6	25,265	0.6	5,586	22.1
문 화 체 육 국	170,903	3.6	164,437	3.6	6,466	3.9
건설도시방재국	668,230	13.9	584,803	12.8	83,427	14.3
소 방 본 부	159,787	3.3	160,699	3.5	△912	△0.6

다) 성질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815,710	100.0	4,576,610	100.0	239,100	5.2
인 건 비	217,755	4.5	216,729	4.7	1,026	0.5
물 건 비	102,595	2.1	102,996	2.3	△401	△0.4
경 상 이 전	1,984,420	41.2	1,926,129	42.1	58,291	3.0
자 본 지 출	1,859,703	38.6	1,722,851	37.6	136,852	7.9
융 자 및 출 자	139,832	2.9	137,000	3.0	2,832	2.1
보 전 재 원	133,865	2.8	133,865	2.9	0	0.0
내 부 거 래	326,754	6.8	286,254	6.3	40,500	14.2
예비비 및 기타	50,786	1.1	50,786	1.1	0	0.0

나. 일반회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101,400	100.0	3,863,300	100.0	238,100	6.2
지 방 세 수 입		760,000	18.5	760,000	19.7	0	0.0
세 외 수 입		136,544	3.4	116,970	3.0	19,574	16.7
	경상적수입	22,689	0.6	32,626	0.8	△9,937	△30.5
	임시적수입	113,855	2.8	84,344	2.2	29,511	35.0
지 방 교 부 세		888,098	21.6	804,615	20.8	83,483	10.4
보 조 금		2,251,758	54.9	2,156,715	55.8	95,043	4.4
지 방 채 및 예치금 회수		65,000	1.6	25,000	0.7	40,000	160.0

2)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101,400	100.0	3,863,300	100.0	238,100	6.2
일 반 공 공 행 정	505,323	12.3	466,271	12.1	39,052	8.4
공공질서및안전	223,318	5.4	200,729	5.2	22,589	11.3
교 육	2,013	0.1	2,013	0.1	0	0.0
문 화 및 관 광	221,758	5.4	209,206	5.4	12,552	6.0
환 경 보 호	366,706	8.9	346,389	9.0	20,317	5.9
사 회 복 지	1,028,750	25.1	1,005,011	26.0	23,739	2.4
보 건	64,221	1.6	58,131	1.5	6,090	10.5
농 립 해 양 수 산	774,653	18.9	734,485	19.0	40,168	5.5
산 업 중 소 기 업	96,057	2.3	74,997	1.9	21,060	28.1
수 송 및 교 통	305,967	7.5	256,729	6.7	49,238	19.2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73,839	4.2	169,595	4.4	4,244	2.5
과 학 기 술	12,920	0.3	12,895	0.3	25	0.2
예 비 비	46,577	1.1	46,577	1.2	0	0.0
기 타	279,298	6.8	280,272	7.3	△974	△0.4

나) 조직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101,400	100.0	3,863,300	100.0	238,100	6.2
의 회 사 무 처	12,220	0.3	12,244	0.3	△24	△0.2
공 보 관	1,889	0.1	1,939	0.1	△50	△2.6
새 경 북 기 획 단	21,024	0.5	20,224	0.5	800	4.0
도청이전추진단	2,178	0.1	2,244	0.1	△67	△3.0
기 획 조 정 실	216,764	5.3	217,067	5.6	△303	△0.1
경제과학진흥국	100,739	2.5	96,171	2.5	4,568	4.8
공 무 원 교 육 원	4,660	0.1	4,674	0.1	△13	△0.3
감 사 관 실	381	0.0	381	0.0	0	0.0
보건복지여성국	1,079,504	26.3	1,054,502	27.3	25,002	2.4
행 정 지 원 국	412,055	10.1	381,040	9.9	31,015	8.1
환경해양산림국	593,806	14.5	559,935	14.5	33,871	6.1
보건환경연구원	7,207	0.2	7,230	0.2	△22	△0.3
농 수 산 국	554,124	13.5	527,799	13.7	26,325	5.0
농 업 기 술 원	39,607	1.0	38,228	1.0	1,379	3.6
투 자 통 상 국	53,478	1.3	31,425	0.8	22,053	70.2
관 광 산 업 국	30,851	0.8	25,265	0.7	5,586	22.1
문 화 체 육 국	170,903	4.2	164,437	4.3	6,466	3.9
건설도시방재국	640,223	15.6	557,796	14.4	82,427	14.8
소 방 본 부	159,787	4.0	160,699	4.2	△912	△0.6

다)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101,400	100.0	3,863,300	100.0	238,100	6.2
인 건 비	214,713	5.2	213,687	5.5	1,026	0.5
물 건 비	98,787	2.4	99,218	2.6	△431	△0.4
경 상 이 전	1,576,101	38.4	1,517,811	39.3	58,290	3.8
자 본 지 출	1,811,736	44.2	1,675,853	43.4	135,883	8.1
융 자 및 출 자	8,832	0.2	6,000	0.2	2,832	47.2
보 전 재 원	17,900	0.4	17,900	0.5	0	0.0
내 부 거 래	326,754	8.0	286,254	7.4	40,500	14.2
예비비 및 기타	46,577	1.1	46,577	1.2	0	0.0

다. 특별회계

1)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계	714,310	100.0	713,310	100.0	1,000	0.1
의료급여기금운영	356,764	50.0	356,764	50.0	0	0.0
치수사업	27,100	3.8	26,100	3.7	1,000	3.8
경북도립대학운영	7,409	1.0	7,409	1.0	0	0.0
광역교통시설	907	0.1	907	0.1	0	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6,830	6.6	46,830	6.6	0	0.0
지역개발기금운영	275,300	38.5	275,300	38.6	0	0.0

2)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14,310	100.0	713,310	100.0	1,000	0.1
	세 외 수 입	291,363	40.8	291,363	40.8	0	0.0
	경상적 수입	41,108	5.8	41,108	5.8	0	0.0
	임시적 수입	250,255	35.0	250,255	35.0	0	0.0
	보 조 금	290,947	40.7	289,947	40.7	1,000	0.3
	지 방 채 및 예치금 회수	132,000	18.5	132,000	18.5	0	0.0

3) 특별회계 세출예산

가) 기능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14,310	100.0	713,310	100.0	1,000	0.1
일반공공행정	275,284	38.5	275,284	38.6	0	0.0
교 육	3,197	0.5	3,197	0.5	0	0.0
사 회 복 지	356,764	50.0	356,764	50.0	0	0.0
산업중소기업	46,830	6.6	46,830	6.6	0	0.0
수 송 및 교 통	907	0.1	907	0.1	0	0.0
국토및지역개발	27,100	3.8	26,100	3.7	1,000	3.8
기 타	4,228	0.6	4,228	0.6	0	0.0

나) 조직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14,310	100.0	713,310	100.0	1,000	0.1
기 획 조 정 실		275,300	38.5	275,300	38.6	0	0.0
	예산담당관실	275,300	38.5	275,300	38.6	0	0.0
경제과학진흥국		46,830	7.0	46,830	6.6	0	0.0
	에너지정책과	46,830	6.6	46,830	6.6	0	0.0
보건복지여성국		356,764	50.0	356,764	51.0	0	0.0
	사회복지과	356,764	50.0	356,764	50.0	0	0.0
건설도시방재국		28,007	3.9	27,007	3.8	1,000	3.7
	균형개발과	907	0.1	907	0.1	0	0.0
	치수방재과	27,100	3.8	26,100	3.7	1,000	3.8
경북도립대학		7,409	1.0	7,409	1.0	0	0.0

다) 성질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14,310	100.0	713,310	100.0	1,000	0.1
인 건 비	3,042	0.4	3,042	0.4	0	0.0
물 건 비	3,809	0.5	3,779	0.5	30	0.8
경 상 이 전	408,318	57.2	408,318	57.2	0	0.0
자 본 지 출	47,967	6.7	46,997	6.6	970	2.1
용 자 및 출 자	131,000	18.3	131,000	18.4	0	0.0
보 전 재 원	115,965	16.2	115,965	16.3	0	0.0
예비비 및 기타	4,209	0.6	4,209	0.6	0	0.0

라. 지 방 채

○ 발행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명	기 채 선	발 행 액	발 행 조 건		
			이 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계		40,000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지원사업	공공자금 관리기금	10,000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균분 상 환	도 비
지 방 도 사 업	"	30,000	"	"	"

○ 지방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 12월말 잔액			2009년 상 환 액		
	계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합 계	270,604	218,900	51,704	25,559	17,900	7,659
지역개발기금	270,185	218,500	51,685	25,347	17,700	7,647
청사정비기금	419	400	19	212	200	12

마. 채무부담행위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채무부담 행위내용	채무부담 행위액		사유	상환계획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경정	기정		
계				30,000	15,000		
지방도 건설 확포장	지방도 확충	지방도 건설	○지방도사업 (도로철도과)	17,000	5,500	지방도사업 조기 마무리	2010년
지방도 확충 및 유지관리	도로 교통망 확충	사리도 확포장	○지방도사업 - 사리도확포장사업 (종합건설사업소)	7,700	4,700	"	"
"	도로 교통망 확충	사리도 확포장	○지방도사업 - 사리도확포장사업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4,300	3,800	"	"
"	교량 안전 관리	교량및 터널 개보수	○지방도사업 - 교량개체사업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1,000	1,000	"	"

6. 검토의견

가. 총괄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5,766억원보다 2,391억원(5.2%)이 증액된
4조 8,157억원임
- 회계별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8,633억원보다 2,381억원
(6.2%)이 증액된 4조 1,014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33억원보다 10억원(0.1%)이
증액된 7,143억원임

◆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8,157	100.0	45,766	100.0	2,391	5.2
일반회계	41,014	85.2	38,633	84.4	2,381	6.2
특별회계	7,143	14.8	7,133	15.6	10	0.1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 기정예산 3조 8,633억원보다 2,381억원(6.2%)이 증액된 4조 1,014억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역은

- 지방세는 이번 추경에 변동분이 없으며
- 세외수입의 순증은 196억원으로
 - 공공예금이자수입 △99억원, 잉여금 184억원, 부담금 69억원, 융자금원금수입 28억원, 재산매각수입 12억원 등임
- 중앙지원금은 1,785억원으로
 - 지방교부세 835억원, 보조금 950억원이며
 - 주요 내역은
 - 지방교부세 재정 보전분 762억원
 - 노인복지시설운영(분권교부세) 47억원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48억원
 - 가뭄대책사업 70억원
 - 숲가꾸기 사업 64억원
 - 혁신도시~입석 교차로간 도로 확장사업 70억원
 - 소하천 정비사업 98억원 등임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 내용으로는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부문 616억원
-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부문 329억원
- 사회복지, 보건 부문 298억원
- 농림해양수산 부문 402억원
-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부문 211억원
-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535억원
- 예비비는 이번추경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 기타 부문에 10억원이 감액되었음

라) 성질별 편성 내용으로는

- 인건비 10억원 증액
-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물건비 4억원 감액
- 일반보상금, 출연금,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이전 583억원 증액
-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1,359억원 증액
-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405억원 증액
-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등 융자 및 출자 28억원을 증액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 기정예산 7,133억원보다 10억원(0.1%)이 증액된 7,143억원임

나) 치수사업은

-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신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인 신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부항댐) 10억원을 감액하여 성덕댐 건설에 15억원, 화북댐 건설에 5억원을 계상함

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는

- 세입과 세출 총계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부사업인 지역개발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여 소천문화관 지열 효율화 사업과 풍력발전기 유지관리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다.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1) 지방채

가) 지방채 발행 규모는

- 400억원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00억원, 지방도사업에 300억원이 충당 될 재원임

나) 상환방법

- 이율은 변동금리이며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발행

※ 기재선 : 공공자금관리기금(행정안전부)

2) 채무부담행위

가) 채무부담행위는

- 기정예산 150억원보다 150억원(100%)이 증액된 300억원임
- 지방도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상환계획은 2010년에 상환 예정임

라.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의 증가부분이 없는데 이는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으로 물리게 하고 있음

-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물가 불안, 소비 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道 지방세의 주 수입원인 취·등록세가 당초계획¹⁾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 세수 감소분에 대하여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신세원(新稅源) 발굴, 체납세 징수 등 적극적인 세수 확보 노력과 예산확보를 위한 道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

○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 99억원 감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道 예산 이자수입으로 이는 정부가 올해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내수경기 진작 등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당초예상 했던 이자수입이 예년의 수준보다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1) 2009년도 목표액(취득세 2,780억원, 등록세 2,450억원)

- 이러한 이자수입 감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전국적 현상이며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정부가 이자 손실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으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타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순세계 잉여금 184억원은
비상경제체제 및 재정조기집행에 대응코자 '08년도 회계 최종 결산 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경비 일부를 계상하였으며 금년 5월 최종결산 후 '09년도 제2회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 최종 예산액을 편성할 것으로 판단됨
- 의존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의존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바
- 지방교부세 835억원은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인 분권교부세 추가분과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줌으로서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세 재정 보전분 762억원임

이는 국회에서 정부의 당초예산 확정 후 추가분에 대하여 우리 道에 배정된 것임

○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의존 재원으로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54.9%)²⁾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발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도민의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바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연말 정리 추경시 사업비가 중앙에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수입은

400억원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00억원, 지방도사업에 300억원이 총당될 재원이며 이는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해서라도 중소기업 지원과 도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채 추가발행을 협의함에 따라 당초 지방채 250억원 보다 150억원이 많은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 한 것임

2) 국고보조금 세입(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국고보조금	2,251,759	54.9%	2,156,715	55.8%	95,044	4.4%	

나) 세출예산

○ 금번 추경 예산안은

조기 추경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편성했음

○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조정하였으며

○ 지방세 추가 세수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400억원을 발행하여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 살리기와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봄 가뭄대비 및 재해예방, 농어촌 경쟁력 강화사업과 SOC분야 마무리 사업을 통한 노임살포 등에 재원을 집중 편성하여 일자리가 있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총력을 보이고 있음

○ 세출예산의 기능별³⁾ 특이사항은

-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211억원(기정예산 대비 28.1% 增), 수송 및 교통 부문이 492억원(기정예산 대비 19.2% 增)으로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3) 종합심사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표 참조

살리기와 경기부양과 노임살포 등 서민생활안정에 효과가 큰 SOC 마무리사업인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보상 및 지방도 마무리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세출예산의 조직별⁴⁾ 특이사항은

- 기획조정실, 공무원교육원, 의회사무처 등 지원 부서와 도청이전추진단, 소방본부 등 비(非)사업 부서에서는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청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절감 및 공무원 보수도 일정부분 자진 반납에 따른 것으로 12억원 규모의 특별 재원을 마련하여 농어촌 영어강사 채용 등 6개 사업에 166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파악됨
- 투자통상국의 경우 221억원(기정예산 대비 70.2% 增)으로 추경예산 평균 증감률(6.2%)보다 월등 하게 높은 증가를 보이는데 이 또한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중소기업지원 기반 확충, 공공근로사업 및 행정인턴 확대 시행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심사보고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분류표 참조

○ 일자리 창출 예산과 관련하여

- 국내 고용 동향은 '09년 2월중 실업급여 신청자가 총 40만명이며 신규 실업 급여 신청자도 1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96년 제도시행 이래 최대 규모임
- 도내 고용 동향은 '09년 1월말 도내 실업자 수는 38천명이며 이는 '08년 12월말 28천명에서 1개월만에 1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업률은 2.9% 수준으로 전국평균(3.6%) 보다는 현저히 낮으나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추세임
- 이러한 고용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금번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은 종전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비상경제 체제에 맞게 재편하고 지방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추가대책과 민간부문 일자리 중심에서 벗어나 도와 시군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공공부문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공공부문 일자리⁵⁾는 금년도에 29,506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금년 1월초 당초계획 대비 32%나 증가된 것으로 7,169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인데

5) 『2009년도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분야별 세부 현황』은 참고자료에 게재

이렇게 공공부문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공직자들의 인건비 반납,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절약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 잡세어링(Job Sharing)을 한 결과로 보여짐

◆ 공공부문 일자리 분야별 현황 ◆

구 분	주요 사업명	계획인원	비 고
계		29,506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간병도우미, 장애인 일자리 등	3,498명	
취약계층 실직가장 일자리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	23,726명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인턴 사원제, 행정인턴 등	1,593명	
전문인력 일자리	관광안내 전문요원, 인터넷 선생님 등	689명	

- 이렇게 마련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별 실적 점검, 시군(부서)간 경쟁을 통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 방면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Feed-Back 등을 거쳐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총체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방이양사업⁶⁾의 경우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노인시설 운영 등 국가사업으로 실시해오던 사회복지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성공했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 제대로 복지사업을 펼 수 없는 문제점이 야기됨
- 더구나 2010부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던 분권교부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이 국가사업인 만큼 사회복지교부금 제도 신설시 지방비 부담률을 대폭 낮춰 재정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거나
- 사회복지서비스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기 전까지 공급전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대신 재정부담 책임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지방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재정부담이 과중한 사업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함

6) 『분권교부세 수요별 대상사업(지방이양사업) 현황』은 참고자료에 게재

○ 사업변경(취소) 등에 따른 감추경 사업에 대하여

-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감추경 사업중 화장시설 설치사업 26억원 감액(기정예산 대비 71.7% 減),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설치 3억원(전액감) 감액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시행의 타당성 검토 미흡, 소요예측 판단 착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화장시설 설치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민원 발생 등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지역민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원 해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그 외 퇴직공무원 부부 문화 탐방, 시도 친선 체육대회 참가 경비, 화랑도 성지순례 기반 조성 기본계획 용역사업 등은 유사사업에 포함 발주하거나 행사성 경비로서 전액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잡세어링(Job Sharing)운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음

◆ 세출예산 감액 편성 사업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사 유
				비율 (%)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0	300	△300	100	BTL사업으로 민자투자 100억원 미확보에 따른 국비 전액감
화장시설 설치 사업	1,015	3,584	△2,570	71.7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추진 곤란
제3회 전국 시니어클럽 일하는 어르신 대축제	0	50	△50	100	국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 자체사업 취소
퇴직공무원 부부 문화 탐방	0	150	△150	100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에 따른 해외여행성 경비 감액
시도 친선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유니폼 및 참가여비	0	40	△40	100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에 따른 행사성 경비 감액
산불진화 개인장비 세트	0	20	△20	100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에 따른 경상적 경비 감액
화랑도 성지순례 기반조성 기본계획 용역	0	50	△50	100	새경북기획단 소관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포함 발주

※ 전액감 또는 70%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만 작성함

○ 道の 재정책충 방안과 재정압박 해소와 관련하여

- 매년 사회복지, 도로교통, 소방분야 등에서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지난 1992년 3월 광역소방제도가 도입된 후 소방재정에서 많은 부분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고 금년에도 道 소방관련 예산 1,598억원 중 국비 등 지원은 1.8%에 불과하며 나머지를 도비에서 충당하고 있어 재정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방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국비반영 요구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방분야 추경 예산안(재원별) ◆

(단위:백만원, %)

예산액	구성비	국 비		기 금		도 비		비 고
		국 비	구성비	기 금	구성비	도 비	구성비	
159,787	100.0	2,218	1.4	618	0.4	156,951	98.2	

- 또한, 금번 추경 예산안에서 편성목에 따라 순위를 살펴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34.8%,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28.7%, 시설비 및 부대비가 8.0%,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5.4%를 차지하고 있어 시군에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 지원 경비(경상 및 자본이전)가 전체예산의 6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기초자치단체 지원 경비와 관련하여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금 보조율을 보다 현실에 맞게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여 재정력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조율 조정을 통한 道の 가용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편성목별 구성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전 체 예 산	4,101,400	100%	3,863,300	100%	238,100	6.2%	
자치단체자본보조	1,428,725	34.9%	1,356,268	35.1%	72,457	5.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75,225	28.7%	1,140,170	29.5%	35,055	3.1%	
시설비및부대비	329,095	8.0%	269,315	7.0%	59,780	22.2%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20,684	5.4%	190,684	4.9%	30,000	15.7%	

2) 특별회계

- 道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총 6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및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2종만 계상하였음

○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신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국비보조사업을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상 국고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서상 세부사업장별로 분리⁷⁾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총예산의 증감변동 없이 자체적으로 세부사업만 조정하였음

7) 치수사업특별회계(신규댐 주변지역 사업장별 예산증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추경(변경)예산		증감	비고
계	세부사업	3,000	세부사업	4,000	1,000	
부항댐	신규댐주변지역정비사업	1,000	신규댐주변지역정비사업 (부항댐건설)	2,000	1,000	국비추가확보
성덕댐		1,500	성덕댐건설	1,500	-	세부사업조정
화북댐		500	화북댐건설	500	-	"

참 고 자 료

▣ 2009년도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현황

▣ 분권교부세 수요별 대상사업(지방이양사업) 현황

< 자료 1 >

2009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현황

(단위 : 억원, 개)

사업명	고용단위 (월)	사업비	'09년도 일자리 수	비 고
계	38개 시책	1,485	29,506	
◆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8개 시책	350	3,498	
노인 돌봄서비스	12	56	685	(월68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0	62	700	(월88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3	23	450	(월17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12	22	575	(월30만~85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2	18	70	(월82만원)
방문건강서비스 인력 확대	12	48	228	(월170만원)
다문화 가족방문교육	10	31	290	(월1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12	90	500	(월100만원)
◆ 취약계층·실직 가장 일자리	15개 시책	938	23,726	
공공근로사업	3	115	5,700	(월67만원)
숲가꾸기 사업	10	182	1,187	(월130만원)
산불방지	6	76	1,200	(월100만원)
자활근로사업	12	247	3,000	(월68만원)
농 산업인턴제	10	5	43	(월120만원)
귀농인 인턴제	6	8	100	(월12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12	3	25	(월12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12	1	3	(월1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10	72	367	(월130만원)
깨끗한 경북 만들기	10	22	230	(월96만원)

사업명	고용단위 (월)	사업비	109년도 일자리 수	비 고
노인일자리 사업	7	185	11,637	(월22만원)
문화재특별 관리지원	5	5	100	(월100만원)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12	12	80	(월120만원)
도청이전예정지 불법감시요원	7	1	4	(월120만원)
해안환경 정비 요원	9	4	50	(월80만원)
◆ 청년 일자리	9개 시책	141	1,593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6	54	500	(월140만원)
행정인턴	10	55	504	(월100만원)
신규공무원채용	12	8	330	(월150만원)
산하기관단체 인턴제	9	10	100	(월100만원)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FTA대책위 운영	12	2	7	(월170만원)
특화작물 유전자원 D/B구축 인력	6	2	30	(월100만원)
공예업체 인턴사원	6	3	42	(월100만원)
농어촌영어학교 청년강사	5	3	50	(월1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 청년인턴	9	4	30	(월100만원)
◆ 전문인력 일자리	6개 시책	56	689	
관광안내전문인력 확충	12	19	286	(월55만원)
인터넷 선생님 운영	12	14	150	(월8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파견	12	6	44	(월110만원)
초중고 예술강사 파견사업	5	9	151	(월1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12	7	48	(월120만원)
도립예술단 연주인턴	8	1	10	(월100만원)

< 자료 2 >

분권교부세 수요별 대상사업(지방이양사업)

□ 정상적수요 사업(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관련) - 55개

산 정 항 목		대 상 사 업	
사 회 복 지	노인복지비(10)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경로당 활성화
	장 애 인 복 지 비 (20)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장애인 체육관 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추진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인아동달팽이관수술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아동복지비(10)	아동시설 운영 아동급식 가정위탁양육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입양기관 운영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연기관 운영 결연기관 컴퓨터(PC) 구입비
	그 밖의 복지비(13)	모부자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노숙자보호 쪽방생활자 지원 모부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공공보건인력개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문화관광	문화관광비(1)	청소년상담실 운영	
여성인력개발	여성인력개발비(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비정상적수요 사업(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관련) - 17개

구 분	대 상 사 업
일 반 수 요 (10)	재가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차량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지역봉사사업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공공보건사업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특 정 수 요 (7)	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 체육관 기능 보강 정신요양시설 운영 시·도주최 여성주간사업 지원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증감조서 : 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조서

【삭감조서 : 세입】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계			2,000,000	
148	친환경농업과	토양훈증제지원사업	2,000,000	

【삭감조서 : 세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계			5,405,000	
73	사회복지과	행복재단설립	2,500,000	
106	회계계약심사과	중앙부처전입공무원숙소구입	405,000	
156	친환경농업과	토양훈증제지원사업	2,500,000	

【증액조서 : 예비비】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3,405,000	
	예산담당관	예비비	3,405,000	

【과목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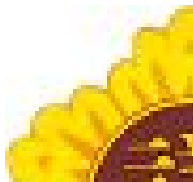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과 목 명		비고
					당 초	변 경	
계			450,000				
75	노인복지과	제3회 전국시니어 클럽 일하는 어르신 대축제	200,000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07-04 민간행사보조	
219	문화예술과	공예업체인턴사원인부임	250,000	문화상품 개발육성	101-10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307-02 민간경상 보조금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3. 31(화)

2009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종 합 심 사 보 고 서



경 상 북 도 의 회

목 차

I . 소관부서	
II . 심사경과	
III . 제안설명의 요지	
IV .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총 규 모	
2. 세입예산	
3. 세출예산	
V . 검토의견	
VI . 질의 및 답변요지	
VII . 토론요지	
VIII . 심사결과	
IX . 소수의견의 요지	
X . 기타 필요한 사항	

2009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합 심 사 보 고 서

I. 소관부서 : 경상북도교육감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3. 13, 경상북도교육감
2. 회부일자 : 2009. 3. 26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 3. 30 : 상정·질의, 토론·의결)

I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추 재 천
2.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IV.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총규모

-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2%에 해당하는 1,803억 7백만원이 증액된 2조 7,015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됨.

◆ 예 산 총 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A - B	증감율(%)
세입 · 세출	2,701,554	2,521,247	180,307	7.2

2.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03억 7백만원이 증액된 2조 7,015억 5천 4백만원으로

○ 이전수입은

- 기정예산 2조 4,437억 4백만원보다 939억 4백만 (3.8%)이 증액된 2조 5,376억 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3.9%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보통교부금 592억 8천 7백만원, 특별교부금 교육인턴십 운영 8억 4천 2백만원, 국고보조금 교육인턴십운영 2억 8천 1백만원 등 4건 5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300억원,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1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기타 이전수입에서 영어원어민강사초청 3천만원 등 8건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은

- 총 461억 4천 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7%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439억 8천 5백만원보다 21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입학금,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에서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인 행정활동수입에서 3백만원, 자산임대 및 자산매각대인 자산수입 20억 5천만원, 잡수입 1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수입은

- 기정예산 335억 5천 6백만원보다 842억 4천 2백만원 (251%)이 증액된 1천 17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842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장 관 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2,701,554	100.0	2,521,247	100.0	180,307	7.2
이 전 수 입	소 계	2,537,608	93.9	2,443,704	96.9	93,904	3.8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2,312,672	85.6	2,252,020	89.3	60,652	2.7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223,850	8.3	190,684	7.6	33,166	17.4
	기 타 이 전 수 입	1,086	0.0	1,000	0.0	86	8.6
자 체 수 입	소 계	46,146	1.7	43,984	1.7	2,162	4.9
	교 수 - 학 습 활 동 수 입	29,418	1.1	29,425	1.2	△7	0.0
	행 정 활 동 수 입	281	0.0	278	0.0	3	1.1
	자 산 수 입	5,908	0.2	3,858	0.1	2,050	53.1
	이 자 수 입	10,109	0.4	10,109	0.4	0	0.0
	잡 수 입	430	0.0	314	0.0	116	36.9
기 타	소 계	117,800	4.4	33,558	1.3	84,242	251
	전년도이월금	117,800	4.4	33,558	1.3	84,242	251

3.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2%인 1,803억 7백만원이 증액된 2조 7,015억 5천 4백만원으로

○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 예산액 2조 4,010억 6천 2백만원보다 1,649억 1천 2백만원(6.9%)이 증액된 2조 5,657억 7천 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8.4%를 차지하며

- 인적자원운용 15억 4천 5백만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339억 4백만원
- 교육격차해소 142억 8천 4백만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103억 7천 5백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166억 7천 1백만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81억 3천 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 평생·직업교육비는

기정 예산액 69억 9천 7백만원보다 7억 1천 8백만원 (10.2%)이 증액된 77억 1천 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4%를 차지하며

- 평생교육 6억 4천 1백만원
- 직업교육 7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교육일반비는

기정 예산액 1,376억 7천만원 보다 40억 9천만원(3.0%)이
증액된 1,417억 6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며

- 교육행정일반 15억 4백만원
- 기관운영관리 161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9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 총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2,701,554	100.0	2,521,247	100.0	180,307	7.2
유아및초중등교육	2,565,975	95.0	2,401,063	95.2	164,912	6.7
평 생 · 직 업 교 육	7,715	0.3	6,997	0.3	718	10.3
교 육 일 반	127,864	4.7	113,186	4.5	14,677	13.0

◆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2,701,554	100.0	2,521,247	100.0	180,307	7.2
유아 및 초중 등 교육	소 계	2,565,975	95.0	2,401,063	95.2	164,912	6.7
	인적자원운용	1,506,210	55.8	1,504,666	59.7	1,546	0.1
	교수 - 학습 활동 지원	170,476	6.3	136,571	5.4	33,904	24.8
	교육격차해소	85,888	3.2	71,605	2.8	14,283	19.9
	보건 / 급식 / 체육 활동	32,738	1.2	22,363	0.9	10,375	46.4
	학교 재정 지원 관리	569,882	21.1	553,210	21.9	16,671	3.0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200,781	7.4	112,648	4.5	88,133	78.2
평생 직업 교육	소 계	7,715	0.3	6,997	0.3	718	10.3
	평 생 교 육	4,159	0.2	3,518	0.1	641	18.2
	직 업 교 육	3,556	0.1	3,479	0.2	77	2.2
교육 일반	소 계	127,864	4.7	113,187	4.5	14,677	13.0
	교육 행정일반	46,727	1.7	45,223	1.8	1,504	3.3
	기관운영관리	42,156	1.6	25,993	1.0	16,163	62.2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7,382	0.6	20,372	0.8	△2,990	△14.7
	예비비 및 기타	21,599	0.8	21,599	0.9	0	0.0

□ 세출예산의 성질별 규모는

○ 인건비는

- 1조 2,594억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9천 8백만원(0.1%)

○ 물건비는

- 942억 3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 9천 2백만원(8.4%)

○ 이전지출비는

- 1,915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5천 6백만원(2.7%)

○ 자산취득비는

- 2,614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7억 8천 1백만원(74.7%)

○ 전출금은

- 8,585억 1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5억 7천만원(7.2%)이 각각 증액되었고

○ 상환지출비는

- 148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9천만원 ($\Delta 16.8\%$)이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금 액	%	금액	%		
합 계	2,701,554	100.0	2,521,247	100.0	180,307	7.2
인 건 비	1,259,402	46.6	1,257,704	49.9	1,698	0.1
물 건 비	94,238	3.5	86,946	3.4	7,292	8.4
이전지출	191,560	7.1	186,604	7.4	4,956	2.7
자산취득	261,409	9.7	149,628	5.9	111,781	74.7
상환지출	14,828	0.5	17,818	0.7	△2,990	△16.8
전 출 금	858,518	31.8	800,948	31.8	57,570	7.2
예비비및기타	21,599	0.8	21,599	0.9	0	0

□ 세출예산의 기관별 편성내역은

- 교육위원회는 기정예산 7억 2천 2백만원보다 2.6% 증가한 7억 4천 1백만원이고
- 본청 예산은 기정예산 1조 9,894억 4천만원보다 4.5% 증가한 2조 795억 9천 7백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77.0%를 차지하며
-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3천 4백만원 보다 11.2% 증가한 142억 6천 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 포항교육청을 비롯한 23개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 5,180억 5천 1백만원 보다 17.2% 증가한 6,069억 4천 8백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2.5%를 보이고 있음

◆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701,554	100	2,521,247	100.0	180,307	7.2
교육위원회	741	0	721	0	19	2.6
본 청	2,079,597	77.0	1,989,640	78.9	89,957	49.9
직 속 기 관	14,268	0.5	12,834	0.5	1,434	0.7
지역교육청	606,948	22.5	518,051	20.5	88,897	49.3
포항교육청	95,415	3.5	86,661	3.4	8,754	4.8
경주교육청	48,966	1.8	43,554	1.7	5,412	3.0
김천교육청	33,579	1.3	28,844	1.2	4,735	2.6
안동교육청	35,590	1.3	32,335	1.3	3,255	1.8
구미교육청	66,196	2.5	55,734	2.2	10,462	5.8
영주교육청	26,727	1.0	23,283	0.9	3,444	1.9
영천교육청	24,802	0.9	22,133	0.9	2,669	1.5
상주교육청	27,430	1.0	23,623	0.9	3,807	2.1
문경교육청	20,585	0.8	15,514	0.6	5,071	2.8
경산교육청	60,452	2.2	55,658	2.2	4,794	2.7
군위교육청	11,080	0.4	9,790	0.4	1,290	0.7
의성교육청	15,162	0.6	13,207	0.5	1,955	1.1
청송교육청	10,701	0.4	8,895	0.4	1,806	1.0
영양교육청	7,965	0.3	6,379	0.3	1,586	0.9
영덕교육청	14,560	0.5	12,821	0.5	1,739	1.0
청도교육청	11,977	0.5	10,576	0.4	1,401	0.8
고령교육청	11,323	0.4	7,769	0.3	3,554	2.0
성주교육청	11,965	0.4	10,076	0.4	1,889	1.0
칠곡교육청	30,147	1.1	18,124	0.7	12,023	6.7
예천교육청	13,981	0.5	10,842	0.4	3,139	1.7
봉화교육청	9,577	0.4	8,399	0.3	1,178	0.7
울진교육청	14,130	0.5	10,148	0.4	3,982	2.2
울릉교육청	4,638	0.2	3,686	0.2	952	0.5

V. 검토의견

□ 세입부문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물경기까지 침체된 상황으로 성장세가 지속적인 둔화를 보이는 관계로 세수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강화 및 특수시책 개발 등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금회 추경의 세입재원 중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33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842억 4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금회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초예산 편성시 추계치를 축소 편성하여 소중한 교육예산이 사장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본예산 편성시에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자체수입의 경우 자산 수입 20억 5천만원(53.2%)이 증액된 바, 영덕교육청의 폐교부지 및 건물 매각이 9억 4천 7백만원이 감액되고, 김천 외 6개 시군의 교육청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29억 5천 4백만원 증액된 것으로 부지매입자가 없고

영덕교육청 청사이전 계획이 보류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나, 이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가급적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부문

○ 세출예산 조기집행에 대하여

- 전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적경비 등을 제외하고 전체 사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예산의 조기집행은 사업의 시기를 당겨 실시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집행에 있어서 그 목적에서 벗어나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 깨끗한 학교 만들기사업 44억 6천 4백만원, 교육인턴십 운영 11억 2천 2백만원, 예술강사지원 22억 7천 9백만원, 영

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13억 4천 5백만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현재 경제사정은 97년 외환위기 직후의 고용대란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용관리를 통하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유지해 가야 할 것임.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 정부차원의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그린스쿨사업 3개교에 160억원, 저탄소 녹색 성장 교육 3억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 저탄소 녹색성장이 환경 및 자원 위기극복과 함께 신성장에너지인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이용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정책임을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고
- 또한, 이 정책에 수반되는 그린스쿨사업이 노후 된 기존학교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약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교육여건 조성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조속히 사업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조기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함으로써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13억 4천 5백만원, 영어타운 운영 6억 2천 8백만원,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운영⁸⁾ 36억 1천 5백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운영 23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어있음.
-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영어교육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해당 사업들이 영어에 대한 노출시간과 영어사용 기회의 확대로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영어학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철저

- 학교운동장조성 및 다목적 체육관건립 76억 1천 1백만원, 생활관 증축 16억 2백만원, 경북학생문화회관 내부시설 및 신축공사 19억 4천만원, 청도학생야영장 시설개선 93억원, 약목중학교개축 86억 5천만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편성되어있음

8)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 해외교포 및 외국인 대학생을 농산어촌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영어강사로 채용하는 사업

- 현재 도내 전체적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과 출산율의 저하에 따라 수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시설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특히 청도학생야영장의 경우 기존 12개의 야영장을 동,서, 남,북부권 4개로⁹⁾ 집중투자하여 운영하도록 계획된 사업의 일부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상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학생들이 단체생활을 통한 독립심, 협동심 함양을 도울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며, 야영장 기능이 소멸되는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냉난방시설 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 일반교실냉난방시설개선 125억원, 장애인편의시설 194억 9천 7백만원이 투자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장애학생들이 불편함없이 교육받을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 사업 추진시 냉난방시설은 학생들이 대부분 생활하는 일반교실에 우선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학생의

9) 동: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 서: 상주학생야영장, 남: 청도학생야영장, 북: 안동학생야영장

접근권,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교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세밀한 배려하에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현재 각각 수립되어 있는 4개년, 7개년의 투자계획¹⁰⁾에 차질이 없도록 세수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지방교육채 상황에 대하여

- 2007년 명예퇴직수당 및 2008년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지방교육채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당해 이자에 해당하는 29억 9천만원 전체를 전액 감액한 것은 도교육청이 교육예산의 건전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VI.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냉난방시설개선 : 2009~2012(4개년)

•장애인편의시설 : 2009~2015(7개년)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31 · 232회 임시회)

2009. 5 인쇄 / 2009. 5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45

FAX : 602-5140

<비매품>